

---

# 2023년 경제정책방향

---

2022. 12. 21

관계부처 합동

# 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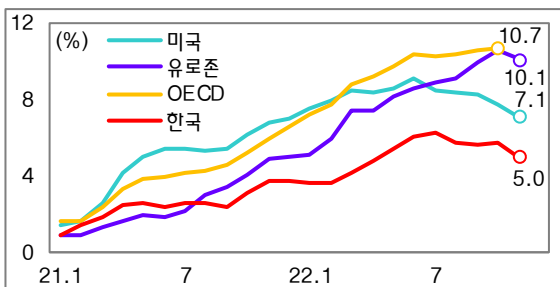
I.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 .....	1
II. 향후 경제여건 점검 .....	2
III. 2023년 경제전망 .....	5
IV. 2023년 경제정책방향 .....	6
1. 거시경제 안정관리 .....	7
2. 민생경제 회복지원 .....	18
3. 민간중심 활력제고 .....	26
4. 미래대비 체질개선 .....	39
[별첨 1] 2023년 상세 경제전망 .....	49
[별첨 2] 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.....	59

# I.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

## □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과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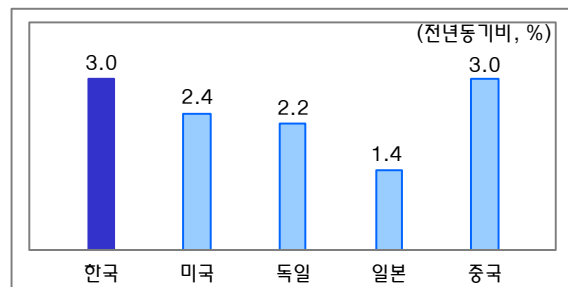
-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적·적극적 대응
  - \* 전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 직면 → 주요국 가파른 금리인상 → 달러가치 상승
  -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, 수차례 걸쳐 민생·물가안정 대책\* 추진
    - \* 유류세·할당관세 인하, 농축수산물 수급관리, 부동산시장 정상화, 임대차 시장 안정 등
  - 관계기관 합동 금융·외환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
    - \* 시장 안정을 위한 「50조원+α」 유동성 지원,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, 안심전환대출 등
- ⇒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, 높은 성장률 기록

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



\* 출처 : 각국 통계청

주요국 성장률 비교('22.1/4~3/4 기준)



\* 출처 : 블룸버그

-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\*」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·시장 중심 전환
  - \* ①민간중심 역동경제, ②체질개선 도약경제, ③미래대비 선도경제, ④함께가는 행복경제
  - 규제혁신, 세부담 완화, 수출·투자지원 등으로 민간활력 제고
  -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구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
  - 신산업·신기술 육성, 인구·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 미래대비
  - 사회안전망 보강, 근로유인·기회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
- ⇒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

☞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·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·체질개선 가속화 필요

## II. 향후 경제여건 점검

◇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

### 1 경기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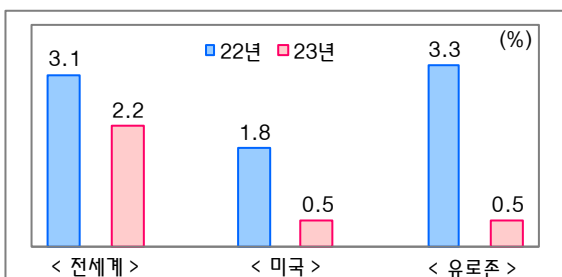
#### □ (대외)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

-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,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
  - \* '22→'23년 성장전망(% , OECD) : (세계경제) 3.1 → 2.2 (美) 1.8 → 0.5 (유로) 3.3 → 0.5
    - ↳ 글로벌 금융위기, 코로나 위기 제외시 '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예상
-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
  - 다만, 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, 신흥국 부채위험, 러-우 전쟁 향방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

#### □ (대내) 대외여건 악화,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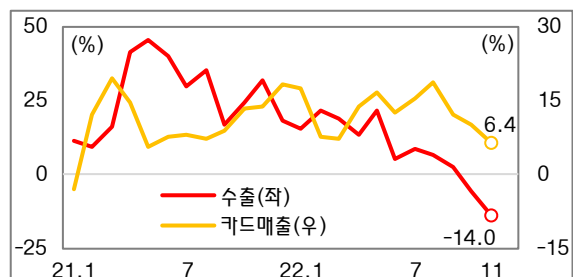
- (수출·투자) 세계경제·반도체 업황 부진, 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,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
  - \* '22→'23년 반도체 매출전망(% , WSTS) : (전체) 4.4 → △4.1 (메모리) △12.6 → △17.0
  - \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18.4 (2/4) 13.0 (3/4) 5.8 (10) △5.7 (11) △14.0
- (소비)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
  - 다만,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, 자산가격 하락 및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
  - \* 가계 대출금리(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, %) : ('21.6) 2.92 ('22.1) 3.91 (6) 4.23 (10) 5.34

'22~'2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



\* 출처 : OECD

수출·카드매출 증가율(전년동월비) 추이



\* 출처 : 관세청, 여신금융협회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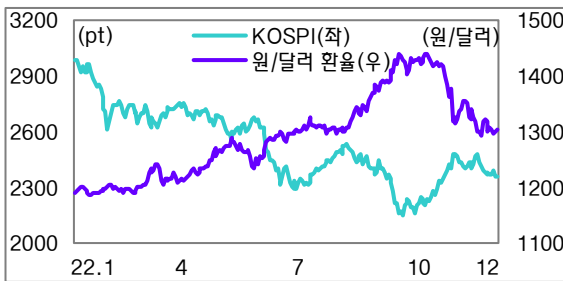
## 금융·부동산시장 여건

### □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,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

- (금융시장)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,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경기 향방,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
  - 특히, 유동성·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기업 중심 신용위험 증대
- (부동산시장)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거래위축,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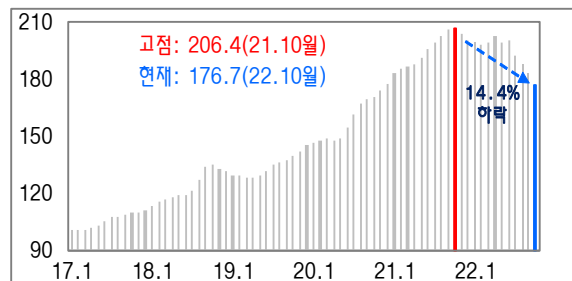
\* '22.1~10월 평균 주택거래량 : 4.5만호, 역대 최저 수준 ('06~'21년 월평균 7.9만호)

주가지수 및 환율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

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('17.1월 = 100)



\* 출처 : 한국부동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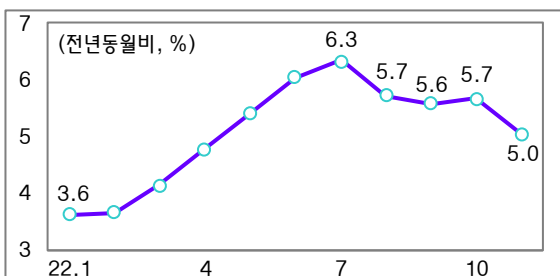
## 3

## 민생 여건

### □ [물가]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,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

- 원자재가격 하락, 수요둔화 등으로 상방압력 점차 둔화 전망
  - \* 국제유가(\$/b, WTI, EIA<12월>) : ('22<sup>e</sup>) 95 [(1/4)94 (2/4)109 (3/4)91 (4/4<sup>e</sup>)84] → ('23<sup>e</sup>) 86
  - 다만, 전기·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, 원자재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
- 내년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

소비자물가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('22.1/4~3/4)

(전년동기비, %)	명목지출	실질지출
▶ 전체소비	5.6	0.5
- 음식·숙박	18.2	10.1
- 차량연료	22.1	△3.1
- 주거	4.5	2.5
- 식료품	△2.2	△7.7

\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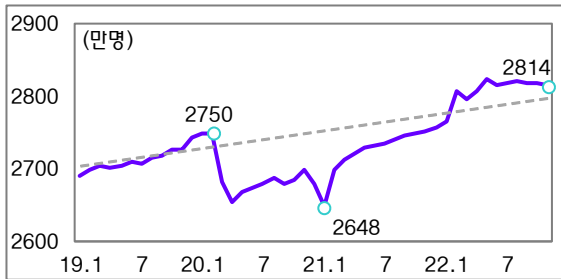
## □ [고용]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**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**

- 금년 고용은 일상회복, 비대면·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

\* 취업자증감(만명) : ('20)△22 ('21)37 ('22.1~11) 84 <'00년 이후 최고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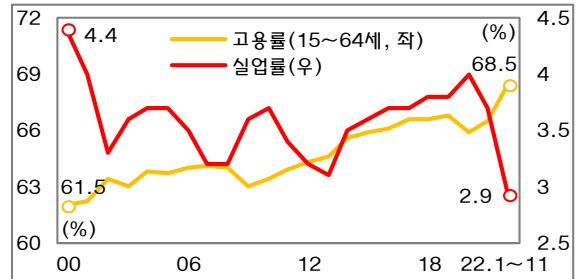
-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영향, 경기둔화, 인구총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망

취업자수(SA)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고용률·실업률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('22년은 1~11월 평균)

## 4 구조적 여건

### □ **민간활력 둔화 속 정책대응 여력 제한, 경제구조 변화도 가속화**

- 지난 수년간 정부·재정 주도의 경제운용,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

- 급격히 증가한 국가·가계부채 등으로 정책대응 여력도 제한

\* 국가부채(조원, <GDP대비(%)>) : ('11) 420<30.3> → ('16) 627<36.0> → ('22<sup>e</sup>) 1,069<49.7>

\* 가계부채(조원, 기말) : ('11) 916 → ('16) 1,343 → ('21) 1,863 → ('22.3/4) 1,871

- 인구총격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, 성장동력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시급

- 특히, 디지털화·탄소중립·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구조 전환에 대한 적응 여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

◇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**경기·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심화** 전망

☞ **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체질개선 노력 병행** 필요

### Ⅲ. 2023년 경제전망

	2022년	2023년
▪ 경제성장률(%)	2.5	1.6
▪ 취업자증감(만명)	81	10
- 고용률(%, 15~64세)	68.5	68.7
▪ 소비자물가(%)	5.1	3.5
▪ 경상수지(억불)	220	210
- 통관수출(%)	6.6	△4.5
- 통관수입(%)	19.2	△6.4

#### ① (성장)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(2.5%)보다 둔화(1.6%) 전망

-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·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,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

\* '22→'23년 성장전망(% OECD) : (세계경제) 3.1 → 2.2 (美) 1.8 → 0.5 (유로) 3.3 → 0.5

\* '22→'23년 반도체 매출전망(% WSTS) : (전체) 4.4 → △4.1 (메모리) △12.6 → △17.0

-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,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 기대

#### ② (고용) 금년의 높은 기저영향\*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

\* '22년 취업자수(+81만명)는 장기추세 큰 폭 상회 → 내년에는 장기추세로 복귀

- 경기둔화, 방역일자리 정상화 등도 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

#### ③ (물가)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,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(5.1%)보다 오름세 둔화(3.5%)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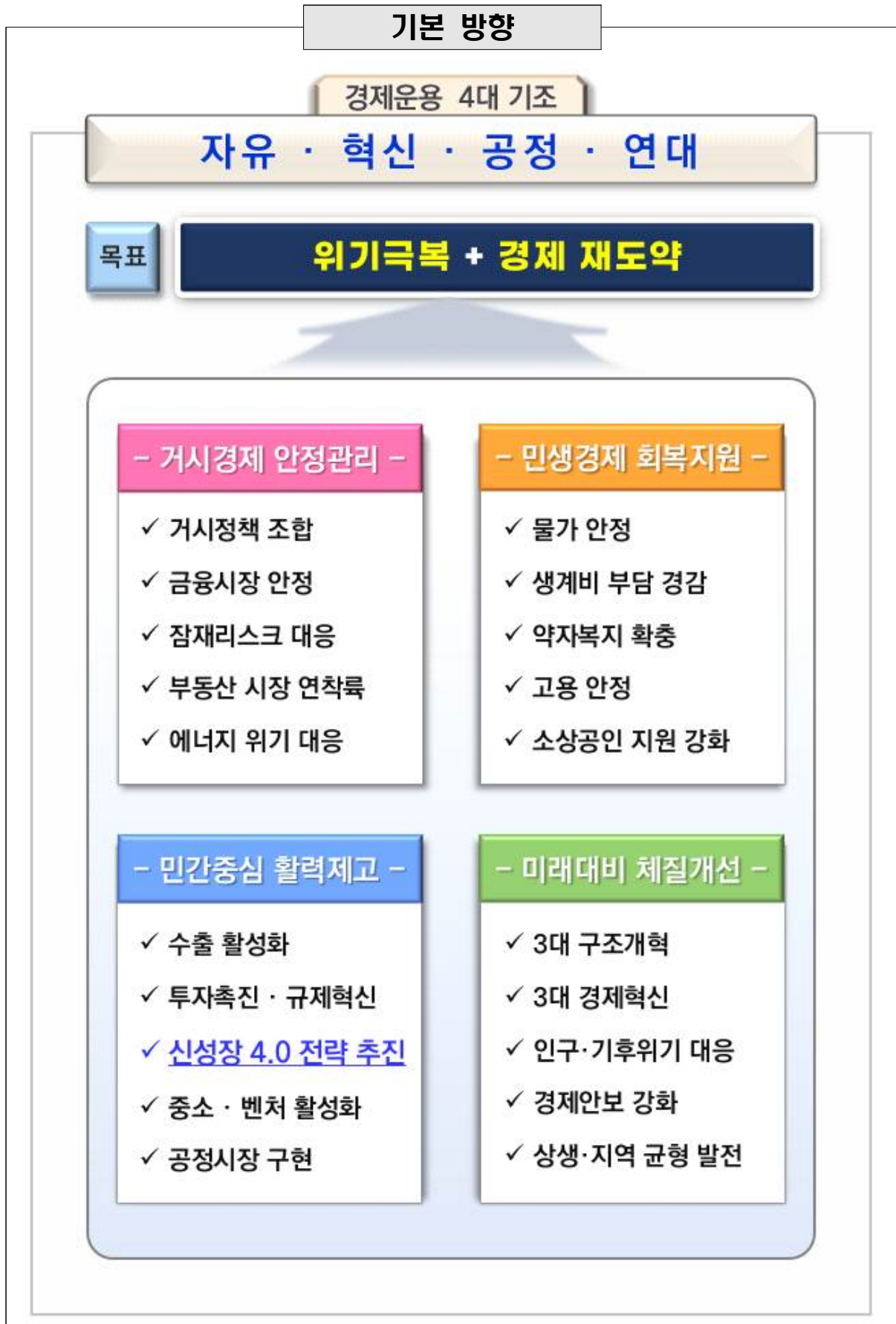
- 다만,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,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상존

#### ④ (경상수지) 금년(220억불) 보다 흑자폭 소폭 둔화(210억불) 전망

-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확대되었으나,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

\* '22→'23년 수지 전망(억불) : (상품수지) 95 → 230 (서비스·소득수지) 125 → △20

## IV. 2023년 경제정책방향





# 1

## 거시경제 안정관리

☞ “선제적 리스크 관리, 적시 정책대응 등으로 위기극복 기반 마련”

### [1] 거시정책 조합

◇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, 리스크·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

#### 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

○ (중앙)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(65%) 추진

\* 상반기 집행목표(%): ('19)61.0 ('20)62.0 ('21)63.0 ('22)63.0 ('23<sup>e</sup>)65.0

▪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,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\*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 지원

\*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, 이후 정부가 원리금 지원

▪ 코로나19 계약특례\*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 연장

\* 선금지급 한도 확대(70→80%), 입찰공고기간 단축(7→5일 등)

▪ 예타 조사기간 단축(9→6개월) 등 신속예타 제도 도입

○ (지방) 상반기 조기집행(60%),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 뒷받침

▪ 교부금 등 신속배정,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\* 등으로 신속집행 유도

\*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전 既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

▪ 공공자금 활용 저리 용자<sup>1)</sup>, 중앙·지방 통합집행관리<sup>2)</sup> 등 집행 제고

1) 지역상생발전기금(6,000억원), 지방재정공제회자금(1,600억원), 공자기금(100억원) 등 총 7,700억원

2) 매월 집행실적 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, 연말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

▪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·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경 편성 적극 추진

\* 시·도 관계관 회의 등 통해 지역경기 둔화시 적기 추경 협의

○ (공공기관) '23년 63.3조원(잠정)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\*를 전년대비 상향

\* 상반기 집행목표(%): ('21)53.0 ('22)53.0 ('23<sup>e</sup>)55.0

## ②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

- (금융) 위기대응 능력 확보,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리스크 관리 및 경기회복 지원 강화
  -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 유지·확대를 유도\*하고 정책 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역력 선제적 확충 등 추진
  - \* (예시) 은행 자본확충 및 총당금 적립 점검 강화 등
  -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·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원 확대(495 → 540조원)하여 사상 최대 규모 공급
- (외환)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
  -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\*을 통해 대외안전판 강화
  - \* '23년 만기도래 현황 : <호주> 2월(약81억불) <말련> 2월(약47억불) <인니> 3월(약100억불)
  - G20·ASEAN 등과의 거시정책 공조 강화 및 금융협력 활성화
  - \* (G20)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 의장국(韓·佛)으로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논의 주도 (ASEAN+3) 금융안전망(CMIM) 제도개선 및 디지털금융·기후변화 대응 논의

## ③ 거시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감지·대응력 제고

- (정책공조) 기재부·한은·금융위·금감원 등 거시정책 당국간 공조채널 확대 및 협의·소통 강화
  - \* 장·차관급 비공식 간담회, 실무급 컨퍼런스콜 및 실무회의 등 수시 개최
- (컨틴전시)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·즉시 대응
  - 복잡·다양화되는 위기징후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(EWS)\* 전면 개편 추진
  - \* 국내외 금융불안과 실물위험을 종합한 월별 경보시스템(국제금융센터)
  - 리스크 요인별 비상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 재점검 및 상황 발생시 단계별 대응조치 즉각 시행

## [2] 금융시장 안정

◇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·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도모

### ①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

#### 【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 】

○ (회사채·CP) 기발표한 시장안정조치\*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

\* (채권시장안정펀드) 20조원, (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) 16조원, (부동산PF 보증) 15조원, (증권사 보증 PF-ABCP 매입) 1.8조원 등

○ (금융기관 유동성) 한국증권금융 등 여유재원 활용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 지원, 필요시 추가 규제유연화 검토

▶ (증권사 유동성, 3조원)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 활용하여 증권사 유동성 직접 지원

▶ (은행권) ①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(92.5%, '23.6), ②예대율 규제 완화(은행 100→105%, 저축은행 100→110%, ~'23.4), ③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(250→100%)

▶ (증권) 증권사가 자기가 보증한 ABCP 매입시 위험값 합리적 적용(NCR 유연화)

▶ (보험) ①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(10%→'23.3월까지 한도 미적용), ②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(만기 3개월 이하만 → 즉시 현금화 가능자산은 만기 3개월 이상도 인정)

▪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시장안정조치\*를 적기에 실시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규모·기간 등 조정

\* [대출 적격담보증권 등 확대('22.11.1~'23.1.31)] 29조원, [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(70→80%) 유예('23.2월→'23.5월)] 7.5조원, [RP 매입] 6조원, [채안펀드 출자기관 RP 매입지원] 2.5조원

#### 【 추가 대응여력 확보 】

○ (산은·수은)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은·수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

○ (예보) 금융사 부실 사전차단을 위해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·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 추진

○ (기안기금) 지원기한(現 '25.末) 연장, 필요시 지원 업종추가 등 기금 활용 확대방안 추진

\* 복합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한 기안채 발행시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 추진

## ② 세제지원,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

- (회사채)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
  -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-OTC시장 내 중소·중견기업 주식 포함\*
    - \* (현행) 예적금, 펀드, 상장주식 등 → (개선) 회사채·K-OTC 내 중소·중견기업 주식 추가
  - 하이일드 펀드\*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저신용 등급 채권(BBB+ 이하) 투자 활성화 유도
    - \* 채권(국내자산 한정)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BBB+ 이하 채권 등을 45%이상 편입
- (국공채) 발행물량 감축·발행시기 조절 등으로 시장안정 선도
  - (국고채) 연간 발행물량을 축소\*하고 1/4분기 순발행은 '22 1/4분기 (42조원)의 절반수준으로 축소
    - \* [국고채 발행(조원 예산기준)] : ('22) 177.3 → ('23) 167.8 / [순발행] ('22) 104.8 → ('23) 61.5
  - (지방채) 연간 발행을 축소('22년 7.5 → '23년 6.5조원)하고 1/4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·공사채 80%(2.5조원중 2.0조원) 상환
  - (한전채)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발행규모를 '22년 대비 큰 폭 축소
    - \*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 위한 한전법 개정 노력 병행

## ③ 해외자금·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·외환시장 안정

- (배당금)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('23.1) 등 배당금 국내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추진
- (증권투자) 외국인 증권자금 국내유입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 및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 개최
- (국채투자)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\*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
  - \* 적격외국금융기관(QFI)을 통한 국채투자 비과세 포함

### [3] 잠재리스크 대응

◇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관리, 회생·재기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

#### ① 서민·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

○ (부채관리)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\*,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

\*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등('22.7~)

○ (채무조정)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·확대

▪ 원리금 상환 곤란 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('23.1/4)

\* (현행) 실직·폐업·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이하 1주택자 → (개선) 매출액 급감,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시도 포함

▪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\*(2조원) 신청기한('22.12) 연장을 추진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

\* 은행에서 3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감면 등 지원

▪ 채무조정 활성화,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

\*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제출('22.12)

#### ② 부실진단, 재무개선, 회생·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

○ (부실진단)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소규모 기업\*까지 확대

\* (현행)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→ (개선)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(기업신청시)

○ (재무구조 개선)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('23.10월) 연장<sup>1)</sup> 및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('23년 1조원<sup>2)</sup>, '23~'27년 총 4조원) 추진

1) 기한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 마련시, 관계부처 TF(금융위, 기재부 등)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법령 보완(~'23.上)

2) 추가조성 되는 1조원의 운용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프로 변경하여 캠프의 기존 중소·회생기업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

- **(회생) 중소기업 등의 회생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**
  - **재기가능 중소기업에게 재무분석을 중점 지원하여 조기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'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' 신설**
  - **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외 수원, 부산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 및 역할 증대**
    - \* 채무자회생법, 법원설치법 본회의 통과('22.12.8)
- **(재기)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및 연대보증 부담 완화 등 추진**
  - **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**
    - \* (현행) 회생절차 진행·종결 기업 → (개선) 부실징후기업도 포함
  - **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 도입**
    - \*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이용 이력기업이 은행 대출시 지급보증 ('22.12 시범운영 후 '23년 본격 실시)
  - **한계 중소기업 대상 총 1.1조원 규모 저리자금·보증 및 채무 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·재창업 등 재기지원**
  - **정책금융기관\*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 경감**
    - \* (무보) '23년부터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 
(산은·수은·기은) 주채무(기업채무) 감경·면제시 대표자 연대보증채무 완화 방안 마련

#### [4] 부동산 시장 연착륙

◇ 다주택자,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

##### 1]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

- **(취득세 중과 완화)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**
  - \* (현행) <3주택(조정지역2주택)>8% <4주택(조정지역 3주택) 이상/법인>12%
  - (개선) <3주택> 4% <4주택(조정지역 3주택) 이상/법인> 6%
- **(양도세 중과 배제) 한시 유예 중인(~'23.5)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(~'24.5)하고 세제개편안('23.7)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**

- (분양 및 주택·입주권) 단기 양도세율을 '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

구 분	현행	개선
분양권	1년 미만 70%	1년 미만 45%
	1년 이상 60%	1년 이상 → 폐지
주택·입주권	1년 미만 70%	1년 미만 45%
	1~2년 60%	1년 이상 → 폐지

- (대출규제 완화)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, LTV 상한을 30%로 적용

\* (현행)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→ (개선) 주담대 허용<LTV 30%>

## ②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

-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

-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('23.初 별도발표, 국토부)

- 생활안정·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(보유주택 주담대) 규제를 완화\*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

\* ①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(現 3개월 폐지), ②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(現 2억원) 폐지, ③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(現 2억원) 폐지 등

-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,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

-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

- 주택 공시가격 하락('23.3월 발표) 효과를 반영하여 '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%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('23.4)
- '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(목표 현실화율, 이행기간 등)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'23년 하반기 중 마련
- 연구용역, 외부검증 강화,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

-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**특례 보금자리론(1년 한시)**을 확정 후 '23.1/4분기 중 시행
  - \*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(주택가격 6→9억원 이하), 대출한도(3.6→5억원)를 확대하고, 소득제한(기존 7천만원 이하) 폐지

### ③ 정비사업 규제 개선 ·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

- **(재건축 안전진단)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**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('23.1)

- ▶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(50→30%) / 주거환경(15→30%)·설비노후도(25→30%) 비중 상향
- ▶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(30점 이하→45점 이하)
- ▶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→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

- **(공급속도 조절) 기 발표 공급 계획(270만호, 8.16일) 정상 추진**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

- 3기 신도시\*의 경우, '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

\* 남양주왕숙(6.6만), 부천대장(1.9만), 고양창릉(3.6만), 인천계양(1.7만), 하남교산(3.3만)

- 공공택지 內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\*하고,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

\* (신규 매각택지) 사전청약의무 폐지 (기매각 택지) 기한 연장<매입 후 6개월→2년>

- **(PF시장 연착륙 지원)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유통**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

-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(+5조원)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(5조원)을 조기 시행('23.1)하고,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

-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, PF-ABCP<sup>단기</sup>를 대출<sup>장기</sup>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\* 신설(HUG·HF)

\* (현행) ①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②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→ (개선) ①토지 일부(예: 95%)만 매입한 경우, ②분양완료 사업장(분양률 양호 등)도 지원

※ 필요시 추가 출연·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

-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(9.8%↑)



####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

##### 【 민간 등록임대 (임대차 주택의 19%) 】

- (등록임대 복원) '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(전용면적 85m<sup>2</sup> 이하) 등록 재개

		현행('20.7월 전면축소)	개 선
단기 (4년)	건설임대	폐지	-
	매입임대	폐지	-
장기 (10년)	건설임대	존치	-
	매입임대	축소(非아파트만 허용)	<b>복원(85m<sup>2</sup> 이하 APT)</b>

- (세제 인센티브 제공)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

- (지방세)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\*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<sup>2</sup> 이하는 85~100%, 60~85m<sup>2</sup>는 50% 취득세 감면

\* 공동주택·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(60~85m<sup>2</sup>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)

\* 취득당시 가액: (수도권) 6억원 이하 (비수도권) 3억원 이하

- (국세)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하고, 추가 인센티브 제공

-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(수도권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)

\* ①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증과 배제 및 증부세 합산 배제

②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(양도차익의 20%) 배제

- 의무임대기간을 10년(현 장기임대 기준)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

\* (10년) 수도권 6억/비수도권 3억원 이하, (15년) 수도권 9억/비수도권 6억원 이하

- (대출규제 완화)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

- **(공공성 확보)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<sup>1)</sup>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<sup>2)</sup>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**

1)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

2) 2주택자(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)에 대해서는 취득·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

## 【 민간 사적임대 (임대차 주택의 60%) 】

- **(시장 질서 안정)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** 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
  - **임차인 알권리 강화**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
    - \* (계약전)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(계약후) 계약체결 후~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<11.21일 완료>
  - **법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('22.7~'23.1) 결과를 '23.2월중 발표**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 구축
- **(임대차 2법) 연구용역 결과(~'23년)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·방향에 대한 관계부처(국토부·법무부·기재부)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추진**

## 【 공공임대 (임대차 주택의 21%) 】

- **(공급 확대)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('23년 10만호, 정부안 기준)을** 차질 없이 이행하되, **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**
- **(질적 개선)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, 일자리·복지서비스 결합 확대\***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
  - \* 주택수(만호 '17~'21→'23~'27) : (일자리연계형주택) 1.6→2.0 (고령자복지주택) 0.2→0.5
  - **(주거복지사)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 복지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상담·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('23~)**
  - **(지원단가 상향) 도심·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지원단가 상향 반영**
    - \* [건설형] ('13-'22) 평균 3.9%↑ → ('23) 7%↑(최근 10년 최고수준 인상률)
    - [매입형] (일반) 1.4억 → 1.6억, (신혼부부) 1.7억 → 2억, (다자녀) 1.7억 → 1.95억
    - [전세형] (일반) 0.83억 → 0.93억, (신혼부부) 0.9억 → 1억, (다자녀) 1.02억 → 1.22억

## [5] 에너지 위기 대응

◇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 유도

### ① 가격 메커니즘 ·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

- (전기·가스요금)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·가스공사 누적적자·미수금이 '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
  - 국제유가 등 고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 (△37→△25%, '23.1~)
- (인센티브) 선제·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방안 마련
  - (가계)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 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
  - (기업)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용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하고 지원을 상향(현행 최고 90% → 100%)
  - 중소·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<sup>1)</sup> 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<sup>2)</sup>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1) 의무진단 대상이 아닌 사업장(연간 500~2,000toe 사용)을 대상으로 비용보조 추진

2) KEEP(에너지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 효율혁신 파트너십) 우수기업 대상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

###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

- (체질개선) 에너지절약 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
  - (기기) 대형마트·편의점 등 대상 냉장고 교체지원(개방형→폐쇄형 냉장고)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(EERS) 확대
  - (건물)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(연면적당 소비량)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진단·개선권한을 지자체에 부여
- (공공부문) 수급상황 악화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\* 시행 검토

\* (예시)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, 승강기 운행제한, 무인·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

## 2

## 민생경제 회복지원

☞ “물가·생계비 부담은 낮추고, 일자리와  
안전망은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”

### [1] 물가 안정

◇ 세제 및 재정지원,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 
가격안정 유도

#### ① 에너지·먹거리·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·서비스 가격 안정

- (에너지) 석유류 및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 연장
  - 경유·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연장(~'23.4)
  - 유연탄·LNG 개별소비세 감면(△15%)조치 연장(~'23.上)

- (농축수산물) 할당관세·예산지원, 수급관리 등으로 가격안정 도모
  -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\*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,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적용 적극 검토
  - \* 양파, 돼지고기·닭고기, 대두유·해바라기씨유, 커피원두, 감자전분·변성전분 등
  -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<sup>1)</sup>를 확대하고 가맹점 확대 등 이용 편의성 제고<sup>2)</sup>

1) '22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확대(590억원→1,690억원, '23년 예산안 기준)

2) 제로페이 판매 (현행)특정 기간설추석감장 등 선착순 → (변경)수시판매 및 선물기능 추가  
가맹점 확대: (농산물) 600→700개, (수산물) 790개 → 850개 이상

-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\*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(1.8%) 추진
- \* '23년 가격인상분('23년 판매가격 - '21년 8월 판매가격)의 80% 지원
-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%까지 확대
- (공공요금)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\*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·분산 추진

\* 상·하수도 요금, 쓰레기봉투료, 시내버스 요금, 전철요금 등

-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(균특회계 배분 등)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 유도

## ② 유통고도화, 선제적 수급조절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

- (유통구조)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(10개소) 구축,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\*(청과) 등 유통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정보제공 확대
  - \* 거래소 설치·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(가칭)농식품거래소법 제정(23)
-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확대(18개→참깨·쌀 등 추가)
- (수급조절) 농축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가격안정 유도
  -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구축
  -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 간소화<sup>1)</sup>, 주요 농축산물 국영 무역 수입선 사전 발굴·확보<sup>2)</sup> 등으로 수급불안 적시 대응
    - 1) (예시) 검역창고 이동 전 검사(2~3일 소요 → 당일 처리), 검역증 우선 발급 등
    - 2) 민간 실적이 저조하거나, 새로운 수입선 발굴이 필요한 경우(예: 양파감자·마늘·계란 등)
  - 조정관세 품목은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(23~)
  - 농수산물 비축사업의 긴급가격안정 예산을 확대하되 핵심 품목 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

## [2] 생계비 부담 경감

◇ 서민·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

### ① 교통·통신·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

- (교통)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(40→80%)을 6개월 연장(22.末→23.上)하고, 청년·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
  -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(5→3.5%, 100만원限) 인하 6개월 연장(23.上)
- (이자비용)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(취득당시 기준시가 5~6억원)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\*
  - \* '23년초 연구용역 발주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 마련

- **(교육)**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'22년 수준(1.7%)으로 동결\*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 추진('22→'25末)

\* 학자금 대출금리(%) : ('20.1학기)2.0 (2학기)1.85 ('21)1.7 ('22)1.7

- **(통신)** 기존 5G 요금제(24~31GB)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출시 적극 유도, 마일리지 활용 확대\* 등 추진

\* 소멸예정 통신사 마일리지의 통신요금 사용 등을 위한 클릭 절차 간소화

- 공공 와이파이 증설(사내버스 29만대, 공공 4,400개소) 및 중소·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,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\* 일몰 연장

\* 통신사가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공유하고 일정한 도매대가 수령

## ② 취약계층의 에너지·먹거리·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

- **(에너지)**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\*을 확대

\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 대상

- 전기·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

- **(먹거리)**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<sup>1)</sup>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<sup>2)</sup> 마련

1)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

2) 예타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확대 추진, 농어업식품기본법 개정

- **(생필품)**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단가 인상

\* (기저귀) 6.4→8.0만원/月, (조제분유) 8.6→10.0만원/月, (생리대) 1.2→1.3만원/月

- **(금융)**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\*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지속

\* (근로자햇살론) 1,500→2,000만원 (햇살론뱅크) 2,000→2,500만원 (햇살론15) 1,400→2,000만원

-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(최대 100만원) 즉시대출 지원('23.上)

- **(소득지원)**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영세어업인까지 확대

- 영세 소규모 어가, 어선원 대상 연간 120만원 지원

### 3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

- (금융)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\*

\* (예시)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(90→100%)

- (세제) 월세 세액공제(한도 750만원) 대상 주택 기준 상향(3억→4억원)

- 전·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(年 300→400만원)

- (제도) 공공주택 공급, 공공임대 혁신 등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「서민·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」을 조속히 발표(국토부)

- ▶ 공공주택(분양+임대)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공간 확보
- ▶ 공공임대 혁신 및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
- ▶ 적절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

- (피해지원)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 위한 범정부 「법률지원 TF」 가동, 보증금 수령(보증보험 가입자), 법률구조 등 다각적 지원

-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(22.7~23.1) 결과를 '23.2월중 발표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사항\*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 강화

\* 계약~입주 전 체납여부 확인, 우선변제권 취득 전 임대인 근저당 등 설정 금지 등

-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(23.1월 중순)

\* (대출한도) 가구당 1.6억원 (금리) 연 1% 수준 (기간) 최대 10년 등

### [3] 약자복지 확충

◇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

#### 1 보장성 강화,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

- (기초생보) 지급대상·지원액을 상향하고 「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(24~26)」 수립(23.下)

\* (생계·의료)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(30→35% 목표) 및 자동차 등 재산기준 개선 추진 (교육급여) 교육활동지원비 인상(23.3%) 및 지급방식 개편(현금→바우처)

- (긴급복지·의료비)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(월 154→162만원, 4인가구),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난적의료비 확대\*

\* ('22) 외래는 6대 중증질환 한정, 3천만원까지 → ('23) 모든 질환, 5천만원까지 지원

- (사회보험) 영세사업장,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
  - (산재보험) 비전속 특고·플랫폼 종사자 신규 적용(‘23.7)
  - (사회보험료)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  - (고용보험) 소득과약체계에 기반하여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·부과(고용보험법 개정 추진)

## ② 노인·장애인·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

- (노인) 기초연금 금액(월 30.8 → 32.2만원) 인상, 대상확대(628 → 665만명)
- (장애인) 연금·수당인상 및 일자리지원 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
  - \* (장애인연금) 월 최대 38.8 → 40.2만원 (장애수당) [재개]월 4 → 6만원 [시설]월 2 → 3만원
  -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,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인프라 확충,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 등 추진
  - \* 전용인프라 : 장애인음압병상 구축, 이동편의 지원 : 장애인콜택시 지원 저상버스 2천대 확충
- (아동·청소년) 학대피해아동 보호·치유·회복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<sup>1</sup>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<sup>2</sup> 지급 확대 등 추진
  - 1] 월 최대 55 → 65만원으로 인상 2] 자립수당 월 지급액(만원): (‘22.8~)35 → (‘23~)40

## ③ 근로·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

- (직업훈련)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 ‘성과’ 중심으로 개편
  - \* [현행] (기본요건 심사) 신청자격·제한 분야 등 → (과정적정성 심사) 훈련내용·방법·교사 적정성 등 → (성과적정성 심사) 취업률·고용유지기간 등 [변경] 과정적정성 심사 최소화, 기본요건·성과적정성 중심 심사(일반직종 훈련)
  - 성과우수 훈련기관·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 강화
- (구직급여)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, 지급수준·기간·방법 등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(‘23 상반기 개선안 마련 → 하반기 입법추진)
  - 단기 취업·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\*
  - \* 반복수급자(5년간 3회이상) 급여 감액(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 감액) 반복수급 유발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(0.2%p)하도록 하여 사업주 책임 강화
- ※ 고용보험 개편에 맞춰 노·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 논의



- (탈수급)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근로자의 능력·상황 등에 맞춰 자활 또는 탈수급(취업) 지원
  - 근로능력을 보유한 기초생보 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 추진(연구용역 등)
- (교육) 소외계층의 영재·고등교육, 장학금 수급 등 기회 확대
  -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「영재키움 프로젝트」 사업확대 추진
  -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지원 확대 ('22년 50% → '23년 58%)

#### [4] 고용 안정

◇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

##### ① 연령·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

- (청년) 일경험 확대,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,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+a명 지원

- ▶ (기업부담 경감)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(1년간 960만원→2년간 1,200만원, **9만명**)
- ▶ (일경험) 기업탐방프로젝트, 인턴십 등 다양화(**2만명**)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(**2.1만명**)
- ▶ (대학재학생) <sup>(저학년)</sup>진로탐색, <sup>(고학년)</sup>훈련·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범도입(**3만명**)
- ▶ (구직단념청년)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청년도전준비금(최대 300만원) 신설(**5천명**)

-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 확대·통일(29→34세) 및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 상향(1인당 1,200→1,550만원)

- (고령층)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 활동참여 제고,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 병행 검토

- ▶ (사회적 논의) 임금직무조정 근거 마련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 검토
  - ※ 해외사례, 고보 재정상황, 타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,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 종합 검토
- ▶ (장려금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\*

\* 계속고용장려금 : <'22년> 108억(3천명) → <'23년> 268억(8.2천명)  
 고령자고용지원금 : <'22년> 54억(6천명) → <'23년> 558억(5.3만명)

※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('23.1)

- **(중장년) 고용복지+ 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**를 연계하여 고용주 수요 맞춤형으로 채용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\*
  - \* 경력설계-전직.재취업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 지원, 직업훈련 개선방안('23.上) 마련
- **(여성)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**을 해소하여 경제활동참여 유도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(8→12세 이하)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\* 추진
    - \* (예시) 자녀연령 상한(現 8세),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
  - 육아휴직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강화
  -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('23.上),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, 돌봄 운영시간 확대\* 등 육아공백 해소 지원
    - \* 초등늘봄학교 추진방안 마련 및 발표('23.1)
  - 어린이집·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·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원·관리체계\* 마련 추진
    - \* 재정구조(재원.지원기준), 지방전달체계, 교사자격.양성, 시설설립.운영기준 등,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통합방안 이행
- ※ **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 마련('23.上)**
- **(중장기 전략) 민간·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진입 촉진** 위한 「고용정책기본계획」 수립('23.1) 및 세부대책 순차발표
  - \* 청년고용서비스 혁신방안,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,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등

## 2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을 위한 즉시 조치 가동

- **(재정지원) 노인·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일자리 조기 시행**
  - \*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을 상향,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설정 등
  - 택시·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(~'23.6)
- **(구인난 관리) 조선업·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 취업지원 TF 설치·운영(17개)하여 지역별·업종별 구인난 관리**

## [5] 소상공인 지원 강화

◇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·활력 제고 지원

### ① 비용부담 완화-재기지원-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

- (부담완화)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및 비용감면 조치 연장
  -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(∼23.12)<sup>1</sup>, 국가 지자체 계약 한시특례 연장(∼23.6)<sup>2</sup>
    - 1] 재산가액의 3→1%(소상공인), 5→3%(중소기업인), 연간 2천만원 한도
    - 2] 절차 간소화, 입찰보증금 경감(5→2.5%), 대가 신속지급(5→3일) 등
  - 자동차 등록, 계약체결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발행이율 상향<sup>1</sup>, 매입의무 면제 대상<sup>2</sup>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
    - 1] 채권발행이율(%) : 1.05→2.5 / 2] 비사업용 소형차(1,000~1,600cc) 신규·이전 등록시, 2,000만원 미만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체결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
- (재기지원)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(평당 13만원) 및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\*와 연계
  - \* 유관기관캠코, 지신보 등 성실채무조정자 정보공유 → 재기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 우대
- (경쟁력 강화) IP·로컬 브랜딩\* 지원, 로컬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서의 스케일업 적극 지원
  - \* (IP브랜딩) 혁신 아이디어 출원·보호 패키지 지원 (로컬상권) 읍면동 단위 브랜드 구축

### ②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

- (여가) 지역경제 활성화·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(부처님오신날, 성탄절)
- (축제)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릴레이 행사 개최
- (관광)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활성화 유도
  - '여행가는 달' 정례 개최(매년 6월) 및 '문화가 있는 날'\* 확대
    - \*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확대(전국 2,000 → 2,200여개)
  - 지역 거점공항(인바운드 시범공항) 지정,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 지원
  - 방한관광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심사 개선추진 및 빠르게 증가 중인 동남아 지역 관광객 중심 비자제도 개편

## [1] 수출 활성화

◇ 범정부 수출·수주 총력지원 및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출 5대강국 도약 뒷받침

## ① 수출 전략회의 및 5대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정비

- 대통령 주재 「수출전략회의」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(‘23.上)
  - ▶ (주력산업) 반도체 등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
  - ▶ (해외건설)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
  - ▶ (중소·벤처) 글로벌 강소기업+,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 등 추진
  - ▶ (관광·콘텐츠) 메가이벤트 개최,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통한 K-콘텐츠 수출 등
  - ▶ (디지털·바이오·우주)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, 바이오 육성, 우주 스타트업 등
-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 활용한 수출·수주확대 전략 수립·추진
- 윈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수출·수주 프로젝트를 총괄·지원하고 현장애로 신속 해결
  - \* (개별기업 지원) 금융·물류·마케팅, (공동지원) 세제·예산·규제·통상외교 협력 (해외건설, 인프라, 원전, 플랜트 등) PM을 지정하여 수주성공 밀착지원 추진

## ② 금융·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

- (금융)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(351→360조원), 환변동·고금리·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 마련
  - ▶ (환변동)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 확대(+30%p),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‘통화전환옵션부대출’ 공급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등(‘18~22 평균대비 +89억불)
  - ▶ (고금리) 금리우대프로그램(최대 1.5%p, 수은) 기한연장(‘23.末)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(수은법 시행령 개정)
  - ▶ (지정학불안) 러-우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 실시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·한도 우대지원 신설(수은, 1.2조원)

- **(다변화) 중견·중소기업 전용 「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」 신설**
  - \* (재정) 수출바우처 선정시 가점 부여 (금융) 금리·보증료·보증비율·한도 등 우대
- **(수출물류) 내수기업 수출기업화,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·물류바우처<sup>1)</sup> 지원 확대<sup>2)</sup> (중진공)**
  - 1) (수출바우처) 시장조사, 인증 획득, 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(기업당 3~10천만원)  
(물류바우처) 물류비 지출액의 70% 지원(기업당 2,000만원 한도)
  - 2) ('22) 1,075억원, 3,972개사 → ('23) 1,197억원, 4,282개사
- **(수출인프라 확충)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 개장('23.下) 및 배후단지 추가 공급(50만㎡, '23.上)**
  - 美·EU·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추가 확보(3→8개소, '27)하여 우리기업에 물량 우선배정,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 혜택 제공

### ③ 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, 방산수출 4대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

- **(해외 인프라) 연 500억불 수주,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(~'27)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 강화**
  -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·금융 총력 지원
  - \* 사우디 네옴신도시(5,000억불), 인니 신수도 이전(358억불), 폴란드신공항(74억불) 등
  - KIND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(0.5→2조원),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 확대(국내→해외 금융기관) 등으로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
  -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마련
  - \* (중동) 대규모 발주예상→ 수주역량 총결집 (아시아) 도시인프라 분야 진출 및 금융원조와 결합 (중남미)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확대
  -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대 설치(현 6개→7개, '23년)하여 컨설팅, 시장정보 등 지원 강화
- **(원전)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하여 범정부 세일즈 외교 강화**
  -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·폴란드 원전 등 수주 집중
  - \* (체코)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, (폴란드) 원전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
  - 원전건설의 개·보수,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
  -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 검토

- (방산) '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\*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·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

\* '22년 우리 방산수출은 최근 5년평균의 5배 수준인 170억불 달성(역대 최고치)

- (맞춤형 지원) 권역·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·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기술 혁신펀드\* 조성(1,200억원 규모)

\* 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·중소기업에 컨설팅·자금·R&D 등 지원

- (포스트세일즈) 구매국이 무기체계 품질에 만족·신뢰\*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운용 노하우·교육훈련·후속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지원

\* 우리 군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영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 제고

- (방산생태계) 민·군기술협력<sup>1)</sup> 강화(1조원 이상, ~'27), 약 3,300명의 인력양성<sup>2)</sup> (연 500억원) 통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

1) 국방기술 민간이전 민간 혁신기술 국방분야 접목,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&D 추진

2) 기계·항공, 소재·부품·장비 등 분야

#### 4 FTA · 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

- (무역협정) 다자간 경제협력체·협정(IPEF, CPTPP 등) 참여, 신흥국(중동·중남미·아프리카 등) FTA 체결, 기존 FTA 개선 등 수출저변 확대

\* (신규) 한-GCC FTA·한-에콰도르 SECA 협상 진전,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추진 등  
(개선)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, 한-인도 CEPA 개선협상 등

- (개발협력) ODA 사업규모 확대(4.5조원), 전략적 활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

- 지식공유사업(KSP·EIPP)을 통해 우리 기업 참여 가능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EDCF 대형인프라 사업\* 연계 지원

\* (예시) [우즈벡] 안그렌시 상수도 현대화사업, [케냐]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

- PPP 사업 활성화<sup>1)</sup>, 국제기구 협력<sup>2)</sup>, 한-중남미 혁신포럼 신설<sup>3)</sup> 등으로 ODA를 해외시장 개척, 기업진출 등 기회로 활용

1) Public Private Partnership, (인니) 자바섬 반텐주 카리안담 건설사업

2) 전략적 신탁기금 운용, ADB 연차총회(23.5월) 계기 우리기업 홍보 행사 개최 등

3) IT, 인프라, 바이오, 핀테크 등 한국기업 참여 → 한-중남미 기업간 네트워크장 마련

-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글로벌 연대를 위한 ODA 병행

## [2] 투자촉진 · 규제혁신

◇ 인센티브 확대·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 
규제혁신·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### 1] 획기적 세제 · 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

○ (세제)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%로 상향('23년 투자분 한정)

\* 공제율(%) : [현행] 일반/신성장원천기술 3%, 국가전략기술 4% → [개선] 일괄 10%

※ 투자증가분 공제 : 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 3년평균 투자액) × 공제율

▪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 
관련 핵심기술\* 등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 검토('23~)

\* (예시) 고효율보일러, 요로 설비, 펌프, 압축기,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등

○ (금융)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\*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

\* 산은, 기은, 중진공, 신보, 지신보, 기보의 '23년 시설자금 지원 규모

▶ **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(15조원, 산·기은)**

\* (금리)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%p 낮은 특별 우대금리('23년 한시)  
(대상)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폭넓게 지원하되, 신성장 4.0 프로젝트 우선지원

▶ **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공급(5조원, 산·기보)**

\*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차감등 우대, 신성장 4.0 프로젝트 사업 우선지원 강화

▶ **산업혁신, 공급망 안정,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 운영**

\* (예시)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(11조원, 산은), ESG경영 성공지원자금(1.5조원, 기은) 등

○ (애로해소) 대규모 민자사업,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 
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 적극 지원

▪ 신규사업 발굴·발주 확대, 민간참여 제고, 신유형 민자도입  
(생활 인프라 등)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지속 추진

사업명	추진방식	총사업비	공사기간
GTX-A(운정~삼성)	BTO	2.9조원	'19~'24년
동북선 도시철도(왕십리역~상계역)	BTO	1.0조원	'21~'26년
서부내륙고속도로(평택~부여~익산)	BTO	2.9조원	'19~'24년/'29~'34년
신안산선(안산/시흥~여의도)	BTO-rs	3.3조원	'20~'25년

▪ 경제 규제혁신 TF 등 통해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애로사항 밀착 해소

\* 3대 MICE 단지(잠실·서울역·마곡), 주요기업 공장 신·증설 등

## ② 기업 투자·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

○ **(핵심규제 혁신)**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·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

▪ 이해관계자·관계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세부 혁신방안 마련 계획

①바이오헬스(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,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), ②모빌리티(플랫폼사업,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)  
③에너지(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), ④관광(공유숙박 제도화, 숙박시설 개선 등), ⑤금융(금신분리 완화 등)  
⑥미디어·콘텐츠(게임·OTT·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), ⑦공공조달(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)

※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중(국무조정실)으로, '23년중 탄소중립,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 주요분야의 규제혁신을 중점추진 예정

○ **(규제부담 완화)**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한 창업·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·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 도입

▪ 중기·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요 신설·강화규제 대상 규제예보제\* 도입 추진

\* (현행)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첨부하여 입법예고(관보, 부처 홈페이지 등) 실시 중 (개선) 중기·소상공인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자료 등 추가 제공

▪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·강화규제 한시 적용유예(예: 3년) 방안 마련

▪ 일몰도래한 중요·핵심 규제에 대해 “사후규제영향평가” 도입\*

\* (현행) 일몰 도래시 부처에서 평가 →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(개선) KDI·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규제 비용·편익 등 심층분석 추가 실시

▪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·업지·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 합리화 추진

\* (예시) 친환경 선박·모빌리티 안전기준 마련, 신규업종의 산단입주 지원 및 네거티브존 활성화,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EU수준으로 조정(0.1→1톤) 등

○ **(규제자유특구 고도화)**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(최대 2+2년→4+2년), 기업 주소지 이전의무 해제\* 등 제도 개선

\* (현행) 특구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특레이용을 위해 주소지 이전 필요→ (개선) 주소지 이전 없이, 필요에 따라 특구로 이동하여 실증 가능

○ **(지자체·공공기관 규제) 테마규제(신산업·창업 등) 및 그림자·행태규제(인허가 등)를 적극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 과제 지방이양**

\* (예)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에 영향이 적은 행위 대상 지자체장 허가범위 확대



- 각 부처 소관 공공기관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·발표, 애로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공공기관 확대\*

\* (현행) 공기업·준정부기관 → (개선) 공기업·준정부기관·기타공공기관

### 3 제로베이스 원칙 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.0 추진

- 기업들의 자유·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집중 발굴·개선
  - \* 민간전문가, 협회(대한변협 등), 단체(경제단체 등) 의견 청취를 통해 재검토 및 추가 발굴
- 장기간(5년 이상) 실제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
- 국민참여입법센터(법제처) 등 건의 창구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

### 4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경감 추진

- (기업공시제 개편) 시장자율감시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
  - \* (현행)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 → (개선) 공시대상 금액 상향 (현행)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 → (개선) 중복 항목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
- (기업결합심사 개선) M&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시, 기업이 자율적으로\*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
  - \* (현행)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→ (개선)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,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
- 기업투자·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&A 신고면제 확대 \*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, 1/3 미만 임원겸임 등
- (부담금 개선) 사회·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
- (수수료 경감)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('20~'21년 매출액 대상 한시 지원) 연장 검토

\* 구체적인 경감수준은 '22년 매출실적 등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

### [3] 신성장 4.0 전략 추진

◇ <sup>1.0</sup>농업(빈곤 극복), <sup>2.0</sup>제조업(중진국 진입), <sup>3.0</sup>IT산업(선진국 진입) 중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여 <sup>4.0</sup>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

#### ①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'신성장 4.0 전략' 마련

○ 과거 산업육성·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

\* 목표지향적 프로젝트 선정 및 민간전문가를 PM으로 프로젝트 관리(美 DARPA 방식)

○ 3대 분야(新기술, 新일상, 新시장) 15대 프로젝트 추진(☞참고)

▪ 신성장 4.0 전략회의(주재: 경제부총리)를 구성·운영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,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

#### ② 신성장 4.0 전략에 맞춰 금융·인재·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

○ (금융) 혁신성장펀드를 '27년까지 25조원\*' 조성하여 집중 지원

\*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(5년간 4.5조원)와 민간매칭(10.5조원) 통해 15조원 규모의 자펀드 추가 결성

▪ 정책금융의 신성장 4.0 전략 중점투자를 유도<sup>1)</sup> 하고 민간과 공동 금융조달 체계 마련 등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변화<sup>2)</sup>

1) 투자 대상기준을 개편하고 신성장 4.0 프로젝트 투자 등에 성과평가 비중 확대

2) (예시) 대출 중심 지원 → 사업특성별로 지분투자 및 메자닌 방식 활용 등

○ (인재양성) 대통령 주재 「인재양성 전략회의」 등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·발표

\* 바이오헬스, 환경에너지, 우주항공,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대책 추가 마련

○ (글로벌 협력) 우리 기업의 참여 수요가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팀 코리아(One Team Korea) 방식 해외진출 추진

▪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, 경협증진자금(EDPF),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(PIS 펀드) 등 연계로 프로젝트 적극 발굴·지원

## [참고] 3대 분야(新기술, 新일상, 新시장)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

① [新기술 : 미래 분야 개척]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 
→ 모빌리티·우주·양자·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

▶ 미래형 모빌리티	'30년까지 C-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, '25년까지 UAM 상용화 등
▶ 독자적 우주탐사	우주항공청 신설('23),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('32) 등
▶ 양자기술	양자컴퓨터 개발('26), 배터리·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('27) 등
▶ 미래의료 핵심기술	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('30),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('25) 등
▶ 에너지 신기술	SMR 표준설계 완성('28),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구축('23 2개 추가선정) 등

② [新일상 : Digital Everywhere]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 
가능한 변화로 연결 →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계

▶ 내 삶 속의 디지털	K-클라우드 구축('23~),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(6G 조기개발·상용화, '30),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AI 제품·서비스 개발·보급 등
▶ 차세대 물류	AI 등 활용 부산항 신항('26) 및 진해신항('29)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로봇배송('26)·드론배송('27) 등 新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식품·의약품·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·구축 등
▶ 탄소중립도시 ▶ 스마트농어업 ▶ 스마트그리드	주거(탄소중립도시), 식품(스마트팜·양식클러스터, 푸드테크), 에너지(전력망)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디지털 접목

③ [新시장 :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]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 
전략 추진 → 초격차 확보·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

▶ 전략산업 No.1 달성	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 추진('23~), 국가전략기술(조특법)에 디스플레이 포함('23) 등
▶ 바이오 혁신	K-바이오 랩허브 조성('25),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'32) 등
▶ K-컬처 융합관광	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('27), '한국형 칸쿤' 5개소 조성('30) 등
▶ 한국의 디즈니 육성	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('25), 메타버스·확장현실 기술개발('23~) 등
▶ 빅딜 수주 릴레이	해외건설·방산·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

### ③ 임무·민간중심 및 기술사업화 등 정부 R&D 지원 패러다임 전환

- (임무지향 R&D)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(국가전략기술 확보 등)을 위한 임무지향형 R&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
  -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·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\* 상향 적용 검토
    - \* 현행 R&D 지원율(% , 연구개발혁신법) : (중소) 75 (중견) 70 (大·공기업) 50
  -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&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(민간 PM 중심)을 운영하고, 정부는 지원역할\*에 주력
    - \* 기반구축, 인력양성, 자금공급, 사업화, 규제혁신 등 지원
- (민간주도 R&D) 성장성·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·고성과 프로젝트\* 추진
  - \*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→ 지분투자(최대 40억원) + 출연R&D(30억원 내외)
  -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\* 등 검토 추진
    - \*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
  - 기술 스케일업 R&D 및 우수한 초기 R&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&D 사업을 보장하는 “우수 성과 이어달리기” 지원
  - 복수의 초기연구(1년)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(초기 연구의 50%)하여 본연구(3년)를 지원하는 경쟁형 R&D 추진
- (기술사업화)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의 연계
  - 공공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‘연구자 창업’ 제도기반 마련
    - \* 연구자 창업의 정의, 지원근거, 휴겸직,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·양도,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 근거 마련
  - 공공연구가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편
    - \* (현행) 통상실시 원칙 → (개선) 공공연구가 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 자율 결정
  - 공공연구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R&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 연계\* (민관 공동 2천억원 펀드 조성)
    - \* 혁신기업 투자 확대 위해 CVC가 운영하는 2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

#### ④ 선제적 사업재편·사업전환 지원 강화

- (사업재편)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제도 전반 정비
  - 일몰예정인(24.8월)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\*을 확대
    - \* (현행) 규제샌드박스, 조특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 → (개선) 연구용역 거쳐 추가
    - ※ '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' 연구용역 종료 후('23.上) 추가과제 발굴
  -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<sup>1</sup> 허용<sup>2</sup>

1] (현행)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배제 → (개선) 신산업 중 지원 필요한 부문은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(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 유예,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 연장)

2] 단,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

- (사업전환)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추진

\* (현행) 표준산업분류 기준 새로운 업종만 허용 → (개선)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·서비스 도입,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

#### 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

- (농식품업) ICT 활용·규모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추진
  - 스마트온실·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\* 구체화
    - \* 농업인·기업·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·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
  -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('23.4/4)하고 자금지원·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펀드조성(100억원) 및 계약학과(4개 대학) 운영
  - 농업 혁신,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(~'27)
    - \* 청년농 신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, 금융부담 완화 등
- (제조업 등)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「산업대전환 전략」 수립('23.上)
  - \* 투자·인재·생산성·기업환경·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후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

## [4] 중소기업·벤처활성화

◇ 중소기업·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

### ①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

○ (모니터링) 기업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'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 추진

\*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(23년)

▪ 기업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 근거<sup>1)</sup>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<sup>2)</sup> 제공

1) 중소기업기본법 개정(23.下)으로 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(정보 수집항목, 대상기업 등)

2)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수집, 수요기업 필요 공고 제공 및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

○ (위기극복 지원)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,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

▶ (3高 대응: 12조원) 비용부담 경감·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

▶ (미래경쟁력 강화 지원: 33조원) 혁신산업 및 창업·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

▶ (재기지원: 5조원)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정비

▪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(~'23.1월)

\* 중·소·상공인 정책금융, 수출환위험 대응, 위기지역 관리 등 정책수단 총망라

▪ 변동·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(6조원)

\*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△1.0% 감면

○ (생산성 제고) 스마트화·지역화 등으로 중소기업 혁신 제고

▪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(23.上)

▪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(23.1/4)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

\* ①R&D, ②판로개척, ③인재확보, ④디지털 혁신 등 4개분야 역량 제고방안 마련

▪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지역경제 위기 타개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(23.1/4) 마련

\* 지역주력산업 개편, 지역대학발 창업촉진, 지역벤처투자 여건개선,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

## ② 자금·인력·M&A 등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

○ (자금) 민간자금이 벤처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벤처모펀드 조성,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 도입

-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100% 벤처모펀드 조성 유도

※ (개념) 창업·벤처투자 목적의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

- ▶ (출자) 모펀드에 출자한 법인 세액공제 및 개인 소득공제
- ▶ (운용)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·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
- ▶ (회수)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·벤처기업 주식·지분 양도차익 비과세

-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,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하여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 조성('23년 0.2조, '27년까지 1조원)

-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(SPC)를 설립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
○ (인력) 벤처협단체 공동 OJT·채용프로그램 등으로 인력난 대응

\* ('23년) 2,400명 이상 양성 추진(민간훈련기관 1,600여명, 대학 800여명)

-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<sup>1)</sup> 및 제도 고도화<sup>2)</sup> 추진

1) (현행) 연간 행사이익 5천만원 → (개선) 연간 2억원 & 누적한도 5억원

2) 부여대상별 요건 차등화, 신고제도 활성화, 부여대상 확대 등

○ (M&A) M&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, 특수목적회사(SPC) 설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M&A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

- M&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(현 20% → 50%)하여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·합병 활성화

- M&A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(SPC) 설립시 이해당사자(피인수기업의 대주주 등)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

- 기술거래 플랫폼(스마트 테크브릿지)에 M&A 관련 정보를 연계\*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이전 수반 M&A 등 지원

\* (현행) 기술이전, 사업화 등 관련 정보 지원 →

(개선) 은행, M&A 중개기관 등 민간기관이 보유한 기업 매입·매각 수요 등 정보 연계

- 창업기획자\*(엑셀러레이터)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

\* 사업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 전문보육·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

## [5] 공정시장 구현

◇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및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에 대한 질서 확립

### ①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

-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인 매출액 기준\*을 상향
  - \* (현행) 연간 매출액 40억원 → (개선) 그간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 상향
-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(심사지침 개정, '23.5)
  - \* 예: 이익의 부당성, 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제외 대상 정비
- 입찰담합 협의회(조달청 등 17개 기관) 소속기관간 협업 통해 공공분야 입찰담합 및 담합 관여행위 조기포착·방지

### ② 납품단가 연동제, 플랫폼 경제, 신산업 등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

- (납품단가)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「상생협력법·하도급법 시행령」 세부기준 마련('23.上)
  -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·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 특례대출·보증 공급
- (플랫폼) 독점력 남용은 방지하되 혁신성·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<sup>1)</sup>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<sup>2)</sup> 제·개정 추진(~'23.上)
  - 1) 매출액 외에도 데이터 수집보유능력, 이용자수, 이용빈도 등 기준으로 시장지배 여부 평가 등
  - 2) <sup>①</sup>플랫폼기업의 이중 혼합형 기업결합은 간이심사(15일내)→원칙적 일반심사 전환 검토, <sup>②</sup>심사시 경쟁제한성 및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 종합 고려
- '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' 중심으로 자율규제 성과<sup>1)</sup>를 도출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자율규제 대상업종 확대<sup>2)</sup> 추진
  - 1) 예: 오픈마켓 표준계약서, 검색·노출 투명성 권고, 혁신공유원칙 등 마련 등
  - 2) (현행) 오픈마켓, 배달앱 → (개선) 숙박앱,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 등 검토
- (기타 신산업) 소비자 동의 없는 구독서비스 자동갱신·결제 등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 마련('23.6)





### [1] 3대 구조개혁

◇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·교육·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

#### ① (노동개혁)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

- (근로시간)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<sup>1)</sup>와 건강권 보호 강화<sup>2)</sup> 병행, 노무비,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여 근무유연화 분위기 확산
- 1) (예시)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·월·분기·반기·연 선택 가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,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
- 2)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 부여 등
- ‘미래 노동시장 연구회’ 권고안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·입법 추진(23.上)
- (임금체계)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, (가칭)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노력 지속
- (이중구조) 고용형태·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,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‘포괄적 개혁 논의’ 착수
- \* 경사노위 등 통해 이중구조 개선 위한 사회적 대화 → 개선안 마련 추진(23.下)
- 원·하청 상생모델 확산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<sup>下</sup> 파견 제도 개편,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 추진

#### ② (교육개혁)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

- (대학규제) 대학 운영요건, 대학평가, 구조조정 등 규제 전면개편
- 대학운영 4대요건을 합리화\*하여 온라인·공유대학 등 혁신 유도
- \* 최소 확보기준 완화, 임차 일부 허용, 총정원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자율화 등
- 획일적 대학 기본 역량진단은 중단하고 평가체제 개편
- \* 교육부 평가 중단,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(전문)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

-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 허용,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한 한계대학 구조개선·청산 지원(「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」 제정)
- (재정지원) 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등 재정여건을 확충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·특성화\* 유도
  - \*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성과관리 추진 및 재정지원 연계, 집행 자율성 제고
-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·권한 강화
  - \* 대학 재정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단계적 개편<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(RISE) 구축 추진(23~)>
- (직업계고 육성) 직업계고 고도화·고졸 취업 활성화 위한 (가칭)직업계고 발전방안(23.上) 마련 및 마이스터고 2.0 추진
  - \*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
- 국가전략 산업 등 첨단분야 중심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
- (인재양성)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마련·발표(23~)
  - \* 「인재양성 전략회의」 등 중심으로 바이오헬스, 환경에너지, 우주항공, 첨단소재부품 분야 대책 발표

### ③ [연금개혁]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

- (국민연금) 재정추계 결과(23.3)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
- (건강보험)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<sup>1)</sup>를 마련(22.12)하고 중장기 과제<sup>2)</sup>는 작업반 논의후 종합계획에 반영
  - 1)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,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
  - 2)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, 수가 결정구조 개편,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
- (요양보험) 장기요양기관 관리·감독 강화 및 요양 대상자 합리적 이용 유도
  - \*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(25) 대비,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방안 마련,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지원 강화
- ※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·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사무 효율화\*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
  - \* (예시)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보험별 신고시기 일치 등

## [2] 3대 경제혁신

◇ 금융·서비스·공공 등 3대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

### ① (금융혁신) 금융규제·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

- (금융규제) 금산분리 완화,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,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지속
  -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(‘23.上) 하고 금융사-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 지속 추진
  - \* (예시)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 합리적 개선 등
  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
  - \* (1단계) 고객자산보호,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 → (2단계)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발행·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
  -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성 강화\* 등 역할 재정립·지원 효율화 추진
  - \*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,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‘23.上)
- (외환시장) 제3자 FX 허용<sup>1)</sup>,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<sup>2)</sup> 구체화
  - 1)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 가능
  - 2)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,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 구체화(‘23년말 법령 개정)
  -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,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신외환법 제정 추진

### ② (서비스혁신)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, R&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

- (지원기반)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,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(‘23.上), 갈등조정 거버넌스<sup>1)</sup> 마련 등 법·제도기반<sup>2)</sup> 확충
  - 1)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갈등해결 위한 거버넌스 마련(연구용역 등)
  - 2) 주요 정책과제 등 논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 TF(경제부총리·민간 전문가 공동 팀장) 설치운영
- (차별해소) 중소기업 조세특례\* 및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
- \* ①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③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자동차세차입, 소득 및 방제 서비스업 등 영세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등 추가

- (R&D·금융)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R&D 약 10조원을 투자하고 R&D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대폭 보완
- 서비스산업 특화 기술금융 및 소액 IP 금융 활성화(0.2조원)

### 3 [공공혁신] 건전재정·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

- (중앙정부) 재정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강화
  -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상향(30→50%),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\* 구축 등으로 건전재정 기초 충실 이행
    - \* 재정건전성 진단 지표를 선별하여 상시 모니터링, 분석, 조기위험경보 체계 구축
  -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<sup>1)</sup>, 조달제도 정비<sup>2)</sup>, 민자투자 대상 시설·사업방식 확대(BTO+BTL 도입) 등 재정제도 혁신 가속화
    - 1) 재정성과관리 위한 12대 핵심과제 선정, 과제별 성과를 소주기 집중관리·공개
    - 2) 조달청 의무적 구매요청 국가계약액을 '26년까지 단계적 상향(물품1→5억원 공사 30→100억원)
  - 구조적 문제 해결,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위한 「재정비전 2050」 수립(23.上)
- (지방재정·국유재산) 건전성 기초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립하고 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매각(5년간 16조원+a)·민간참여 개발\* 활성화
  - \* dBrain내 국유재산 관리강화, 국유재산 장기대부 민간개발 시범사업(23.下) 통해 민간참여 유도
  -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의 차환채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<sup>1)</sup> 하고 중앙-지방간 재정협약<sup>2)</sup> 내실화
    - 1) 한도의 차환채 인정비율(%) : ('19) 25 ('20) 100 ('24) 80 ('25) 50 ('26) 30
    - 2)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및 중앙부처 즉시고지협의 절차 신설, 보증채무 포함 사업에 대한 중투심사 심사근거 마련후 증액기간 연장 재심사 의무화
- (공공기관)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지속 및 자율·책임경영 강화
  - ▶ (혁신지속) 정원조정, 예산절감(경상경비 △3%), 자산매각(14.5조원) 등 차질없이 추진
  - ▶ (관리 합리화)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예타제도 개선, 유형별 관리 차별화
  - ▶ (역량강화) 보수·인사·조직관리를 직무중심으로 개편(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강화)
  - ▶ (투명·윤리) 공시대상 확대, 임직원 정직시 보수삭감 및 해임시 퇴직금 감액 등 규정정비
  - ▶ (개방확대) 데이터 추가개방, 특히 무료나눔 확대, 시설·장비 모바일앱 대여 등 추진
- (디지털플랫폼 정부) 공공·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,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(23.3)
  - \* 한 번 인증으로 민간 앱에서도 정부서비스를 신청·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·확대(자동차검사, 자연휴양림 예약 등 6개, '23.3)

### [3] 인구·기후위기 대응

◇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, 민간중심,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

#### 1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발굴, 사회적논의 본격화
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·적용을 위한 과제 발굴
-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\* 마련 및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'21~'25, '20.12 발표) 수정·보완('23.下)
  - \* 4대 분야(저출산 대응, 축소사회 대비, 고령사회 대비, 경제활동인구 확충) 6대과제 선정
-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및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<sup>1)</sup> 추진,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<sup>2)</sup>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
  - 1) 양육·보육 관련 지원제도 효과성 제고, 저출산 대응 예산사업 정비 등
  - 2) 고령자 계속고용 및 복지제도 개편,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

#### 2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

- (저출산) 육아휴직 기간(1→1.5년)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<sup>1)</sup> 검토(연구용역),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<sup>2)</sup> 마련
  - 1) (현행)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→ (개선) 고용보험 가입 특고·예술인 등 포함
  - 2) (예시)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등
-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보육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
- (축소·고령사회)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외 외국인·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('23.1)
  - \*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생활인구 제도와 다양한 시책사업 통해 지역활력 제고 추진
-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·규모화 유도
- (경활인구) 여성·고령자·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 마련
  - 외국인력(E-9)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(+4.1만명, 월 평균 1만명 이상 신속입국)하고,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\* 마련('22.12)
    - \* 장기근무 비전문인력의 숙련화 및 구인난 심화 업종(예: 서비스업) 도입검토 등

### ③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

- **(기본계획)** 부문·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「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」 마련(˘23.3) 및 **10대 부문별\*** 감축목표 설정
  - \* 전환, 산업, 수송, 건물, 폐기물, 농축산, 흡수원, CCUS, 수소,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
- **(배출권거래제)** 배출권 조정방향·할당방식 등 포함한 「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」 조기 수립\* 추진(˘23.下)
  - \* 법상 수립기한(˘24년말) 대비 1년 앞당겨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제고
  - 배출권 제3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, 거래형태·상품 다각화\* 추진
    - \*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,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검토
- **(핵심기술)** 수소환원제철, 탄소포집·활용·저장(CCUS), 무탄소전원 등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감축기술 R&D 지원\*
  - \*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(˘23~˘30년간 9,352억원), CCUS 기술 상용화(˘23년 942억원) 등
- **(산업단지)** 산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\* 추진
  - \* 친환경 에너지 보급,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산단 구축(˘27년 15개)
- **(新무역장벽)** EU 탄소국경조정제도<sup>1)</sup> 시행(˘26) 전까지 EU 협의 강화 및 철강 등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<sup>2)</sup> 마련(˘22.12)
  - 1) EU內 수입업자에게 수입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부담 부과 제도
  - 2) 탄소배출 측정 및 검인증 기반 강화, 배출량 산정 DB 구축, 탈탄소 기술개발 지원 등

### ④ 기업과 개인의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

- **(기업)**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지원 및 감축인센티브 강화
  - 재정·금융지원 확대<sup>1)</sup>, 탄소차액계약제도<sup>2)</sup> 도입방안 마련
    - 1) 감축설비지원 확대(118 → 159개사) 및 이차보전 금리(˘22년 1.62%p) 상향관련 금융사 협의 추진
    - 2) 특정 감축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선매입
  -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성능에 따른 차등을 강화, 배터리 안전·제조사 사후관리 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안전·이용편의 제고
- **(국민)**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항목\* 및 참여기업 확대
  - \* 텀블러 이용할인(주요 커피전문점 등),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(지자체), 폐휴대폰

## [4] 경제안보 강화

◇ 경협 네트워크 확장, 공급망 대응체계 고도화, 유턴·외투 기업 유치,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

### ① 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선제적 위험관리·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

- (추진체계) 컨트롤타워인 '공급망 안정화 위원회(위원장: 기재부장관)'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연계·조율
- (법·기금) 소부장법 개정, 자원안보법 및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(23.上)을 추진하고 후속 시행령 제정 및 1차 기본계획 수립(23.下)
  - 정부보증채로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신설하고 민간투자 보증·융자 지원
- (위험관리) 수작업 중심의 현행 EWS 점검체계를 시스템화\*하여 부처별 EWS 수집정보를 품목별 유관부처에 실시간 공유
  - \* '범정부 EWS 정보공유 시스템' ISP 결과를 기초로 유관부처 협의회 '24년 예산안 반영
  - EWS 결과에 따라 '위험포착·예방·위기대응'에 따른 조치들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사전 마련
  - 경제안보 품목을 재점검하고 위기 발생시 '경제안보 TF'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·가동

### ②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

- (유턴) 유턴기업 인정 범위<sup>1)</sup> 및 보조금 지급대상<sup>2)</sup> 등 추가 확대
- 1) 기존 대상업종 외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 선정
- 2) 신규설비·토지 외 중고설비 및 기존 공장 매입도 보조금 지급대상 투자로 인정 검토
- 기존 사업장 유희공간내 설비투자도 소득·법인세 감면요건으로 인정하고 협력형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(5→10%) 검토
- (외국인투자) 신산업 전환<sup>1)</sup>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<sup>2)</sup> 검토 (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)
- 1) (예시) 기존 설비를 신성장·원천기술,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
- 2) (예시) 기존 고용 유지시, 신·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교체 투자도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
- 외투기업 취득·재산세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(~25)하고 지자체별 조례 통한 추가 감면 지원(5~7년 → 최대 15년)

○ **(해외자원)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·재정지원 강화**

- ▶ 무형자산(광업조광권 등) 취득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·용자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
- ▶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(현행 5% 이상)을 대폭 완화
- ▶ 해외주회사 개발사업 실패시 국내모기업 구상채권에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
- ▶ 유전개발사업 출자율 상향(탐사 30%→40%, 개발·생산 12%→20%)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공부문 지원 확대 검토

○ **(식량안보)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(밀·콩 등)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**

- \* (국내) 가루쌀(밀 대체)산업 육성, 전략작물 직불금 신설 전문생산단지공공비축 확대 등 (해외) 비상시 반입명령 실효성 제고, 핵심유통시설 확보 등

**3] 경제블록화 및 양자·다자협업 등 네트워크 확장**

○ **(경제블록화)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<sup>1]</sup>, 반도체지원법<sup>2]</sup>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최대화를 위한 교섭지속·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**

- 1] 북미産 친환경차 세액공제,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포함
- 2] 對美 반도체 투자기업 대상으로 중국내 설비투자 제한 조건부 보조금 지원

○ **(양·다자협력) 미국·중국·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**

- \* (美) 경제안보 및 공급망 산업대화 본격화 (中) 공급망, 탄소중립 등 新경협외제 추진 (아세안·인도) 장관급 협의 재개하여 CEPA 개선(인도), 인니 신수도 인프라 협력 등 진전

**[5] 상생·지역균형 발전**

◇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, 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·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

**1] 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**

○ **(인센티브) 개인·기업의 기부확대·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**

- **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<sup>1]</sup> 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<sup>2]</sup> 검토**

- 1] (현행)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→ (개선) '특례기부금' 단체(국가·지자체·학교·병원 등)에 대한 자원봉사 용역 포함
- 2]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 추진



- 자산기부 활성화 위해 부동산 기부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
  - \* (현행)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시 주무관청 허가 → (개선) 기부받은 기본재산을 처분할때 기부자와 협의 등 일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시 주무관청에서 적극검토
- '착한기부자'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등 강화
  - \* 행안부 장관 표창 등 소규모 개최 → 정부포상으로 승격 수상 및 시상식 개최 규모↑
- (투명성) 기부금 모금단체가 수입 및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및 근거법령 개선\* 추진
  - \* (현행) 총 모집·사용액 등 단순 기재 → (개선) 사업별·비목별 세부내역 기재
    - ↳ 기부 관련 단체 의견수렴('23.1) 및 법령개정안 마련('23.上) → 시스템 고도화('23.下)
- 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('20년 시행, '23년 까지 제도기간)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
  - \* 공익법인 세법교실 확대·운영, 분기별 신규 기부금단체 맞춤형 교육 신설

## 2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

- (ESG 경영)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및 중소·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
  -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ISSB(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) 국제표준·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정비
    - \* KSSB(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) 설립 등을 통해 ESG 공시기준 및 검증 관련 국제기준 논의대응·규율체계 마련 등 추진 →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법령 개편방안 검토
  -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-ESG 가이드라인 구체화, 컨설팅, 우수기업 지원 등 추진
- (ESG 투자) 녹색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('22.12)하고,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\* 마련
  - \* 사회적프로젝트 범위·사례·예시,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·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
  - 투자활성화를 위해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 기여도를 반영하는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
- (인프라 구축)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력 양성
  - 특성화 대학원·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
- (추진체계)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(기재부 차관 주재) 구축

### ③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·제도기반 마련

- (제도정비) 「지방분권법」·「균형발전법」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(지방시대위원회) 구축
  - 지방분권·균형발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(‘23~’27) 수립
- (핵심과제) 재정·투자·교육 등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
  - ▶ (자치분권)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충 및 지역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 제도개선
  - ▶ (지방투자)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'기회발전특구' 신설 등 지방투자 지원수단 마련
  - ▶ (공공기관 지방이전)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
  - ▶ (교육혁신) 교육자유특구 지정·운영 및 지방대학 활성화
  - ▶ (지능화 지역혁신) AI 등 지능화기술 기반 지역 디지털생태계 조성
- (고향사랑기부) 개인이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·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)
  - \* (기부금 활용)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지사업 추진 (상한액) 연500만원/인(세액공제) 10만원까지 전액, 10만원 초과분 16.5% (답례품) 기부금의 30% 이내

### ④ 지방투자 확대,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

- (제도정비) 산단 개발 및 관리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방안\* 마련
  - \* 산단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, 입주기업 중심 관리제도 설계 등 산단 혁신방안 마련
- (업종확대) 제조업과의 연계·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<sup>1)</sup>을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<sup>2)</sup>
  - 1) (예시) 자동차정비업 입주허용을 통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
  - 2)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(‘23.4/4)
- (민관협력 강화) 국가첨단전략산업 산단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-기업 간 협약체결 등 “상생 인센티브 체계” 마련(‘23.上)
  - \*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검토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

## 1. 대외 여건

### □ 세계경제 성장세가 위축되고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 전망

- (성장)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, 유럽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전망
  - \* '23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, 코로나 위기 제외시 '90년 이후 최저 수준 전망
  -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나,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인상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 예상
  - 중국 경제 및 러-우 전쟁 관련 불확실성, 신흥국 부채위험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 가능성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OECD<'22.11월>)

	전세계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2년 <sup>e</sup>	3.1	3.0	1.8	3.3	4.4	1.6	3.3	6.6
'23년 <sup>e</sup>	2.2	2.2	0.5	0.5	△0.4	1.8	4.6	5.7

- (물가) 원자재가격 하락\*, 수요 둔화 등에 따라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겠지만,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
  - \* 국제유가 전망(\$/b, 두바이유) : ('21) 69 → ('22<sup>e</sup>) 96내외 → ('23<sup>e</sup>) 88내외
  - \* '22→'23년 가격전망(% , IMF) : (밀)30.9→△8.7 (대두)12.2→△10.8 (알루미늄)10.9→△11.1
  - 주요 원자재 수급여건, 수요위축 강도 등 관련 불확실성 상존

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(% , OECD<'22.11월>)

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'22년 <sup>e</sup>	8.1	6.2	8.3	8.9	2.3	2.0	6.9
'23년 <sup>e</sup>	6.0	3.5	6.8	6.6	2.0	2.2	5.4

- (금융시장)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, 주요국 물가·금리, 경기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예상
  - 글로벌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그간 부채가 누적되어 자산 가격 변동에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유출 확대 가능성
  - \* 신흥국 자금유출입(억불, EPFR) : ('22.1/4)+358 (2/4)△391 (3/4)△183 (10)△49 (11)+44

## 2. 국내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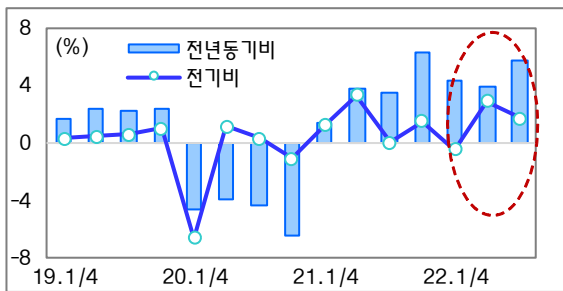
### 1 경제 성장

#### ① [민간소비] '22년 4.6%, '23년 2.5% 증가 전망

- ('22년)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 큰 폭 증가, 다만 최근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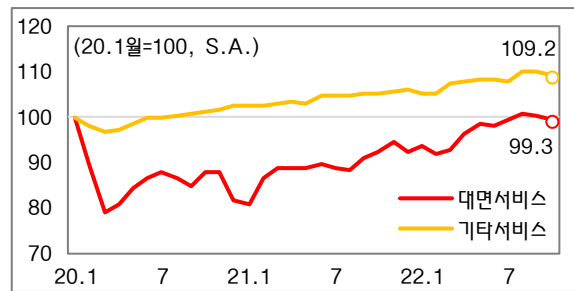
\* 카드매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10.7 (2/4) 14.2 (3/4) 15.3 (10) 10.1 (11) 6.4

민간소비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대면·기타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- ('23년)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으나, 증가세는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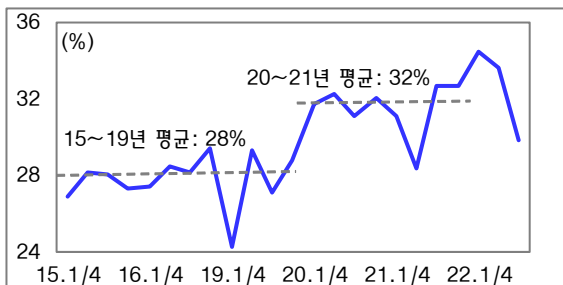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여력이 잔존하는 가운데, 각종 문화·스포츠 행사 및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 회복 견인

\* 해외 출국자수(만명, 월평균) : ('22.1/4) 13.5 (2/4) 31.5 (3/4) 66.5 (10) 77.3

- 다만,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, 고용 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영향 등이 회복세를 제약

\* 가계 대출금리(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, %) : ('21.6) 2.92 ('22.1) 3.91 (6) 4.23 (10) 5.34

가계 흑자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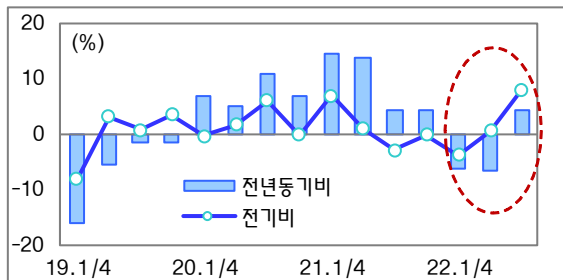


2 [설비투자] '22년  $\Delta 1.8\%$ , '23년  $\Delta 2.8\%$  감소 전망

- ('22년) 하반기 들어 글로벌 공급차질이 완화되면서 반도체·자동차 등의 이연된 투자 집행으로 일시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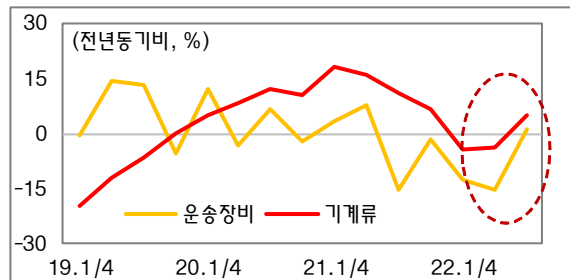
\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1.3/4) $\Delta 3.0$  (4/4) $\Delta 0.2$  ('22.1/4) $\Delta 3.9$  (2/4) 0.5 (3/4) 7.9

설비투자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부문별 설비투자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- ('23년) 글로벌 경기·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,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투자 위축 전망

- IT 부문 투자는 글로벌 수요둔화, 재고 증가 등으로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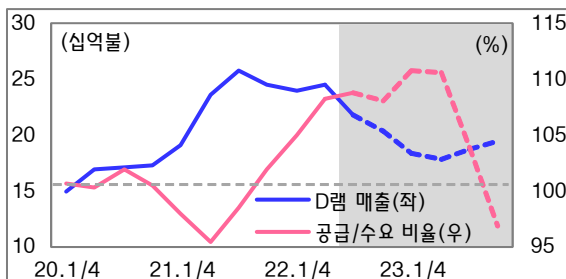
\* '22→'23년 반도체 매출전망(% WSTS) : (전체) 4.4 →  $\Delta 4.1$  (메모리)  $\Delta 12.6$  →  $\Delta 17.0$

- 투자자금의 차입 의존도 높은 기계·철강산업 등도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이 투자 여력을 제한

- 다만, 친환경 자동차·배터리 등 신산업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흐름은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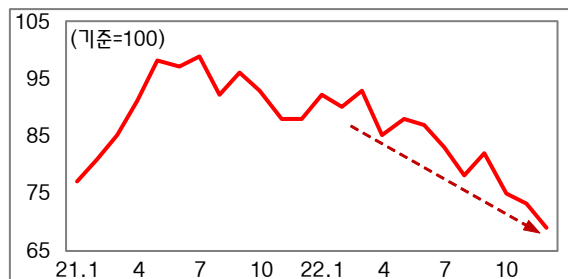
\* 친환경차 등록대수(만대, 국토부) : ('19) 60 ('20) 82 ('21) 116 ('22.11) 156

반도체(D램) 매출액 및 수급 전망



\* 출처 : Gartner

제조업 기업심리지수(BSI, 전망)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- ⇒ '22년은 글로벌 공급차질 영향 등으로 감소( $\Delta 1.8\%$ ), '23년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,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부진 심화( $\Delta 2.8\%$ ) 전망

### ③ [건설투자] '22년 $\Delta 3.0\%$ , '23년 $\Delta 0.4\%$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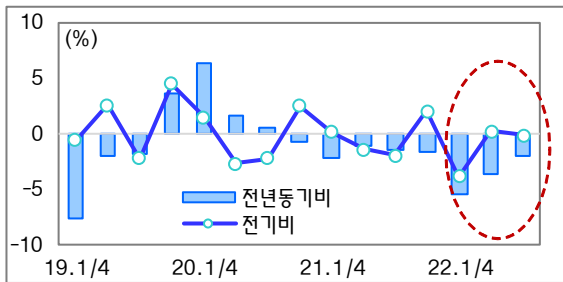
○ ('22년)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

- 다만, 4/4분기에는 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, 일시적 분양물량 증가, 반도체공장 마무리 공사 등으로 부진 완화

\* 건설중간재 공급물가지수(전기비, %) : ('22.1/4) 2.0 (2/4) 5.7 (3/4)  $\Delta 0.1$  (10) 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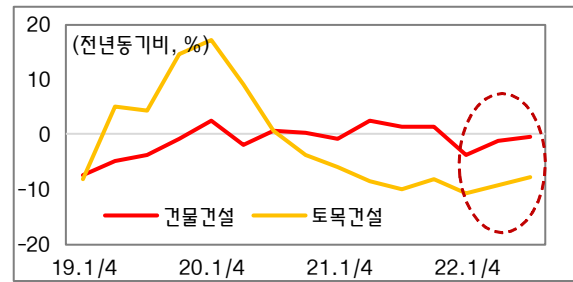
\* 주택 분양물량(만호, 월평균) : ('22.1/4) 2.2 (2/4) 1.7 (3/4) 2.4 (10) 3.6

건설투자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형태별 건설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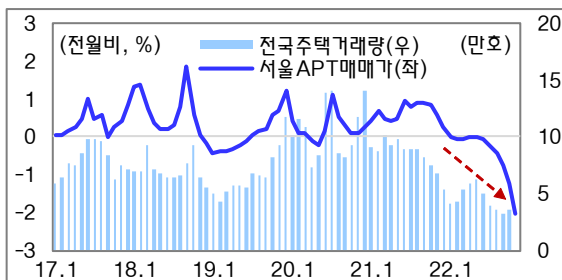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한국은행

○ ('23년) 부동산 경기위축,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부진 지속 전망

- (건물) 주택수요 둔화 및 미분양 재고 증가,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등이 주거용 건물 투자 회복을 제약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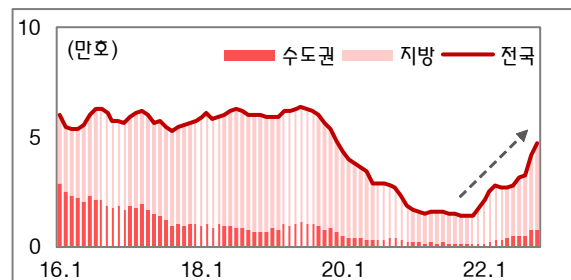
- 상업용·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경기둔화, 설비투자 위축 영향 등으로 개선에 한계

주택가격 및 서울아파트 거래량 추이



\* 출처 : 국토교통부

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



\* 출처 : 국토교통부

- (토목) 자재가격 상승세 둔화, 민자사업 확대, 반도체 단지 조성\*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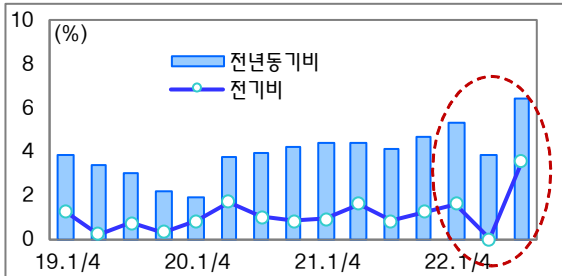
\*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구축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(11.17)

⇒ '22년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진( $\Delta 3.0\%$ ), '23년은 토목건설 개선이 예상되나, 부동산 경기위축 영향 등으로 부진 지속( $\Delta 0.4\%$ ) 전망

#### 4 [지식재산생산물투자] '22년 4.8%, '23년 3.3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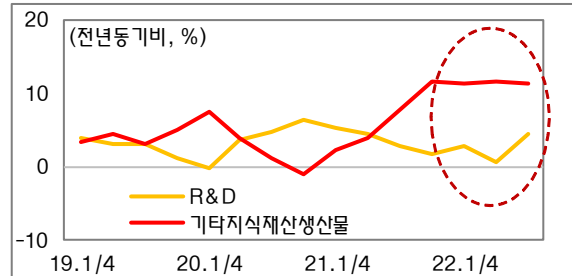
- ('22년) 공공·민간 R&D 확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으로 양호한 투자 증가세 지속
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- ('23년) R&D 예산 확대, 견조한 소프트웨어 투자수요 등은 긍정적 요인이거나, 경기둔화 등이 민간 R&D 투자 제약 전망

\* R&D예산 규모(조원) : ('21년) 27.5 ('22년) 29.5<+8.8%> ('23년<정부안>) 30.7<+3.0%>

- ⇒ '22년은 높은 증가세(4.8%) 지속, '23년은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민간부문 R&D 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(3.3%) 전망

#### 5 [수출입(통관) 수출 '22년 6.6% 증가, '23년 △4.5% 감소 수입 '22년 19.2% 증가, '23년 △6.4%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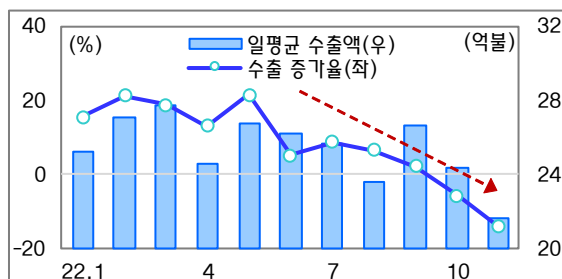
##### 【수출 : '22년 6.6% / '23년 △4.5%】

- ('22년) 상반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반도체 업황 둔화, 중국 봉쇄정책 영향 등으로 10월 이후 감소 전환

\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18.4 (2/4) 13.0 (3/4) 5.8 (10)△5.7 (11)△1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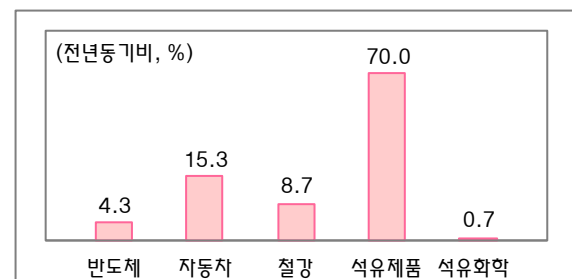
-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 기록(12.10일 '21년 6,444억불 既돌파)

수출 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추이



\* 출처 : 관세청

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(1~11월 누계)



\* 출처 : 관세청

- ('23년)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감소 전망
  - \* '22→'23년 반도체 매출전망(% WSTS) : (전체) 4.4 →△4.1 (메모리) △12.6 →△17.0
  - 선박·친환경차·이차전지 등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지만, 반도체·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중심의 수출 부진 예상
  - 다만,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시 우리 수출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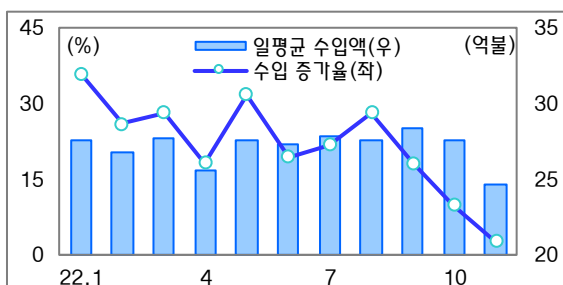
**【 수입 : '22년 19.2% / '23년 △6.4% 】**

- ('22년) 에너지·곡물가격 급등 영향 등으로 큰 폭 증가
  - \* 수입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30.0 (2/4) 23.0 (3/4) 22.6 (10) 9.9 (11) 2.7
- ('23년) 에너지가격이 하락하고, 수출·투자 부진으로 중간재·자본재 수입도 둔화되며 상당폭 감소 전망
  - \* 국제유가 전망(\$/b, 두바이유) : ('21) 69 → ('22<sup>e</sup>) 96내외 → ('23<sup>e</sup>) 88내외

**【 경상수지 : '22년 220억불 / '23년 210억불 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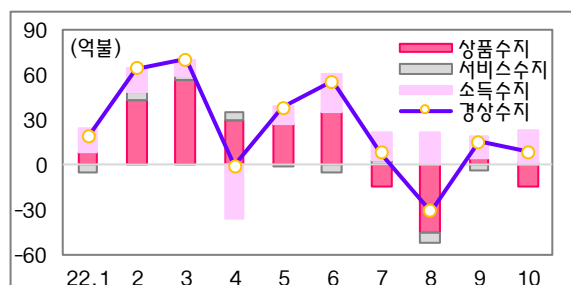
- ('22년) 에너지 수입 급증 등으로 상품수지 중심 흑자폭 축소
  - \* 경상수지(억불) : ('21) 883 ('22.1/4) 154 (2/4) 94 (3/4)△7 (10) 9
- ('23년) 상품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,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소폭 둔화(210억불) 전망
  - 상품수지는 큰 폭의 수입 감소로 흑자폭 확대,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재개, 운임하락 등으로 적자폭 확대 예상
  - \* 해외 출국자수(만명, 월평균) : ('22.1/4) 13.5 (2/4) 31.5 (3/4) 66.5 (10) 77.3
  - \* 컨테이너운임지수(SCFI) : ('22.1)5,067 (3)4,587 (5)4,162 (7)4,061 (9)2,343 (12.16)1,123

수입 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추이



\* 출처 : 관세청

경상수지 월별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

## ◇ 【경제성장】 '22년 2.5%, '23년 1.6% 성장 전망

○ ('22년)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반등 등에 힘입어 2.5%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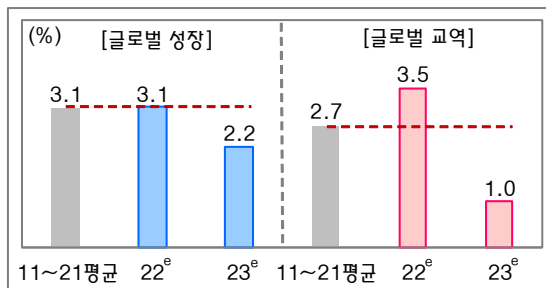
- 다만, 4/4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위축 영향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

\* 전산업생산(전기비, %) : ('22.1/4) 1.3 (2/4) 0.9 (3/4) 0.4 (10월)△1.5

○ ('23년) 전세계적인 경기위축 영향 등으로 성장률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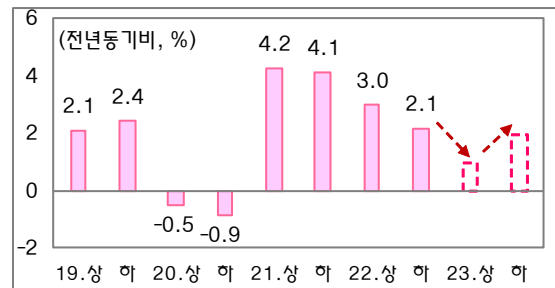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교역부진, 국내 금리상승 영향 등이 수출·내수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
- 특히,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,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예상

글로벌 성장률 및 상품교역 증가율



\* 출처 : OECD, WTO

경제성장률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## 【경상GDP : '22년 4.3%, '23년 4.0% 성장 전망】

※ 경상성장률(%), <실질성장률 + 디플레이터 상승률>

: ('21) 6.7<실질 4.1 + 디플레이터 2.5> ('22<sup>e</sup>) 4.3 <2.5 + 1.8> ('23<sup>e</sup>) 4.0 <1.6 + 2.4>

○ ('22년) 경상GDP는 유가 급등·반도체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디플레이터가 둔화되며 4.3% 성장 전망

	'21년	<1/4>	<2/4>	<3/4>	<4/4>	'22.1/4	<2/4>	<3/4>
▶ GDP Def. (전년동기비, %)	2.5	2.8	1.8	2.5	2.9	2.3	2.1	0.2
- 소비 Def.	2.2	1.5	2.4	2.1	2.7	3.1	3.8	4.4
- 투자 Def.	5.0	1.3	3.9	5.6	8.5	9.1	8.7	8.8
- 수출 Def.	11.3	△0.9	7.3	16.1	22.2	20.6	22.1	14.8
- 수입 Def. <차감항목>	14.2	△4.7	10.8	20.4	31.1	30.2	33.0	29.4

○ ('23년) 실질성장률은 하락하나, 유가 하락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세가 확대되며 올해보다 소폭 둔화(4.0%) 전망

## □ 취업자수는 '22년 81만명, '23년 10만명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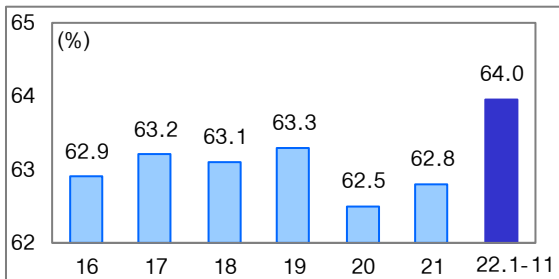
○ ('22년)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수요 확대, 비대면·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이례적으로 큰 폭 증가

\* 취업자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2.1/4)100.1 (2/4)88.0 (3/4)78.0 (10)67.7 (11)62.6

▪ 이에 따라 고용률은 '00년 이후 최고, 실업률은 최저 수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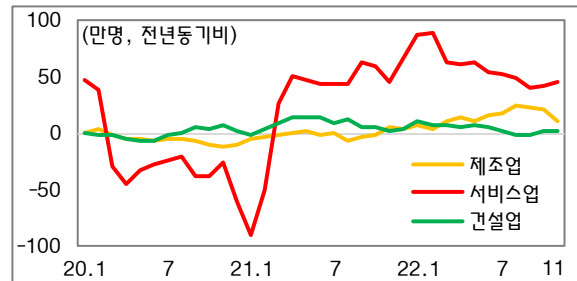
\* '21년 → '22.1~11월평균(%) : (고용률<15~64세>) 66.5 → 68.5 (실업률<15세 이상>) 3.7 → 2.9

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산업별 취업자 증감



\* 출처 : 통계청

○ ('23년)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,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대비 상당폭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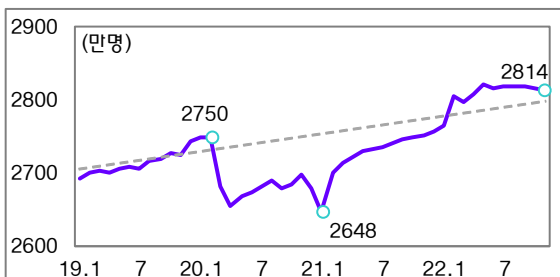
▪ 코로나 방역·보건 일자리 감소 등도 고용 하방요인으로 작용

▪ 다만, 통계적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실제 고용상황 보다 취업자 증가세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

\* 금년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했던 고용 흐름이 추세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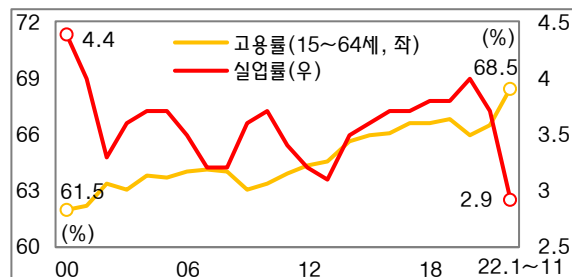
▪ 고용률(15~64세)은 인구감소 영향으로 금년 보다 소폭 상승(68.5 → 68.7%)하겠으나, 실업률도 소폭 상승(3.0 → 3.2%) 전망

취업자수(SA)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고용률·실업률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('22년은 1~11월 평균)

### □ 소비자물가는 '22년 5.1%, '23년 3.5% 상승 전망

○ ('22년) 그간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, 러·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변 요인으로 높은 수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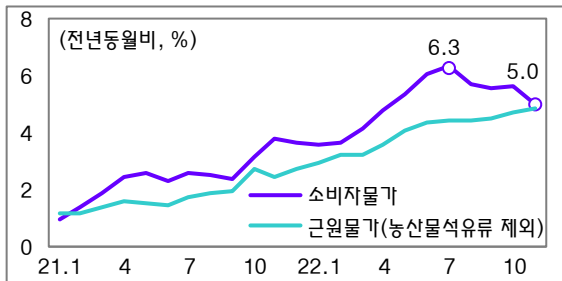
\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3.8 (2/4) 5.4 (3/4) 5.9 (10) 5.7 (11) 5.0

\* 수입물가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32.4 (2/4) 35.2 (3/4) 24.2 (10) 19.4 (11) 14.2

▪ 다만, 최근 유가 하락, 국내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7월을 정점(6.3%)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며 4개월 연속 5%대로 제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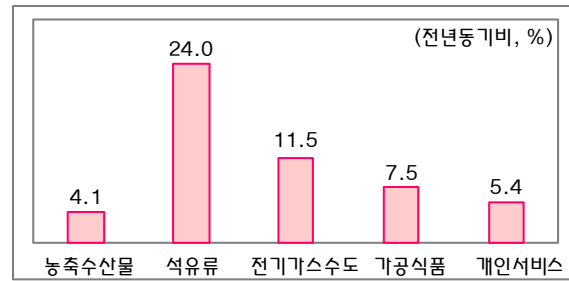
\* 두바이유(\$/b) : ('22.1/4) 96 (2/4) 108 (3/4) 97 (10) 91 (11) 86 (12.16) 76

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'22.1~11월 품목별 상승률



\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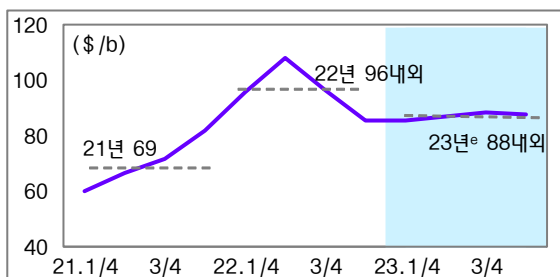
○ ('23년)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금년(5.1%) 보다 상당폭 낮아진 3.5% 상승 전망

▪ 유가·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금년보다 낮아지고, 수요측 상방압력도 완화 예상

\* 국제유가 전망(\$/B, 두바이유) : ('22) 96 내외 → ('23) 88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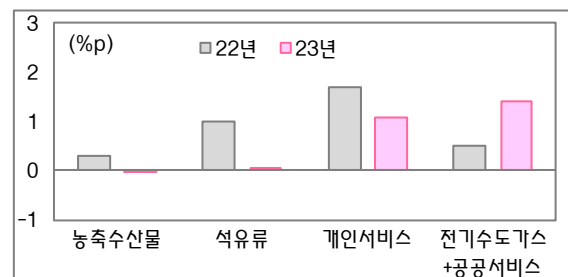
▪ 다만, 전기·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, 원자재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 가능성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\* 출처 :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\* 출처 : 자체 추정

## 2022~2023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'21년	'22년				'23년 전망
		1/4	2/4	3/4	연간 <sup>e</sup>	
전망 전제						
세계경제(PPP)*	5.9	-	-	-	3.1	2.2
Dubai 유가(\$/bbl)	69	96	108	97	96	88
실질 GDP	4.1	3.0	2.9	3.1	2.5	1.6
민간소비	3.7	4.3	3.9	5.7	4.6	2.5
설비투자	9.0	△6.2	△6.6	4.1	△1.8	△2.8
건설투자	△1.6	△5.5	△3.7	△2.1	△3.0	△0.4
지식재산생산물투자	4.4	5.3	3.8	6.4	4.8	3.3
경상 GDP	6.7	5.4	5.1	3.3	4.3	4.0
취업자 증감(만명)	37	100	88	78	81	10
고용률(15~64세, %)	66.5	67.4	68.9	69.0	68.5	68.7
소비자물가	2.5	3.8	5.4	5.9	5.1	3.5
경상수지(억달러)	883	154	94	△7	220	210
상품수지(억달러)	762	107	93	△54	95	230
수출(통관)	25.7	18.4	13.0	5.8	6.6	△4.5
수입(통관)	31.5	30.0	23.0	22.6	19.2	△6.4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21	47	1	47	125	△20

\* OECD Economic Outlook ('22.11월)

1. '22.12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산은 정부 현물출자	기재부
· 채무조정 활성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보완	금융위
· 회생절차 종료 후 시중은행 대출시 캠프 지급보증제도 도입	금융위
·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개월 연장	기재부
·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	기재부
· 국가·지자체 계약 한시특례 연장	기재부·행안부
· 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조정(△37→△25%)	기재부
· 경유·LPG 유류세 인하 연장	기재부
·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	국토부·해수부
· 유연탄·LNG 개소세 감면 연장	기재부
·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조치 연장	기재부·농식품부
· 전·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	기재부
·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	고용부

2. '23.1/4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	기재부
· 예타 조사기간 단축 등 신속예타 제도 도입	기재부
· 수은 등 정부 현물출자	기재부
· ISA 비과세 혜택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·K-OTC 중소·중견기업 주식 포함	기재부·금융위
· 국고채 순발행 축소, 1/4분기 발행은 '22년 대비 절반수준 축소	기재부
· 총 2조원 규모 지방채·공사채·지자체 보증채무 상환	행안부
·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	금융위
· 재무구조 개선 지원대상 선별 강화, 대상 기업 확대	금융위
· 서울 외 수원, 부산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 및 역할 증대	법무부·법원
· 캠프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 확대	금융위
· 다주택자 취득세 증과제도 완화	행안부
·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배제 연장	기재부
·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, LTV 상한 30% 적용	금융위
· 규제지역 추가 해제	국토부
·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	국토부
·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	국토부
·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 기준 적용	금융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임대 복원	국토부
·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	국토부
·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시행	국토부·금융위
· PF-ABCP를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	국토부·금융위
· 표준건축비 현실화	국토부
·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	국토부
·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상향	국토부
· 특례보증자리론 시행	금융위
·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시 등록 허용	국토부
· 「법률지원 TF」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다각적 지원	국토부·법무부
· 에너지 캐쉬백 확대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용자지원·지원율 상향	산업부
·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	환경부
· 할인지원 사업 이용 편의 제고(제로페이 판매방식 개선 등)	농식품부·해수부
· '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전년 수준 동결	교육부
·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추진	교육부
·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	산업부
·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	산업부
·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	기재부·농식품부
·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 연장	금융위
·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단가 인상	복지부·여가부
·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유도	금융위
· 「서민·취약계층 주거복지방안」 발표	국토부
· 위기청소년 및 청년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	복지부·여가부
·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지원 확대	교육부
·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청년 17만+a 지원	고용부
·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 위한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	기재부
·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	고용부
· <sup>가칭</sup>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 수립	교육부
· 「고용정책 기본계획」 수립(1월) 및 세부대책 순차 발표	고용부
· 「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」 발표(1월)	고용부
· 정부일자리 조기 시행	고용부·복지부
· 택시·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	고용부
·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상향 및 매입대상 일부 면제	행안부
· 문화가 있는 날 확대(참여프로그램 2,000여개 → 2,200여개)	문체부
· 수출전략회의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마련	기재부·산업부
·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확대	중기부
· 공급망 경영애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	기재부
· 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	금융위
·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	기재부
· 주요 신설·강화규제 대상 규제예보제 도입 추진	중기부
· 창업기업 대상 신설·강화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 방안 마련	중기부
· 일몰도래한 중요·핵심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	국조실
· 면세점 경영어로 완화 위해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연장	기재부
· 고위험·고성과 R&D 프로젝트 추진	중기부
·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	금융위·중기부
·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	중기부
·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	중기부
· 벤처협단체 공동 OJT 및 채용프로그램 마련	중기부
·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	공정위
· 1/4분기까지 총 2조원 규모 지방채·공사채·지자체 보증채무 상환	행안부
· 디지털플랫폼 정부 로드맵 수립	과기정통부·행안부 디지털플랫폼위
· 노동시장 격차 완화,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 착수	고용부
· 제3자 FX 허용	기재부
· 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	교육부
·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「인재양성 전략회의」 발족	교육부
· 서비스산업 혁신전략, 갈등조정 거버넌스 마련	기재부
· 생활인구 개념 도입(1월)	행안부
·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) 쿼터(11만명) 신속입국 추진	고용부
· 「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」 마련	탄독위·환경부
· 배출권시장 제3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	환경부
·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항목·참여기업 확대	환경부
·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세액감면 허용	기재부
·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도 손금 인정	기재부
· 유전개발사업출자 출자율 상향 등 공공부문 지원확대 검토	산업부
· 용역기부 세제지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액기부 세제지원 강화 방안 마련(2월)	기재부
·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 매각 시 허가 요건 개선(1월)	복지부
· ESG 협의회 구축	기재부 등
· 지방시대위원회 구축	행안부·산업부
· 고향사랑기부제 시행	행안부

### 3. '23.2/4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·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	금융위
· 정책금융기관 중기 대출의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 경감	기재부 산업부·금융위
· 저신용 연체자 생계비 용도 자금 즉시대출 지원	금융위
· '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	행안부
· 취약계층 밀집 거주 영구임대단지에 주거 복지사 배치	국토부
·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	기재부 국토부·행안부
·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	기재부
· 2호 이상 매입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 제공	기재부·행안부
· 물가안정 우수지자체 균특회계 배분시 재정 인센티브 부여	행안부
·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상향 연장	기재부
·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 연장	과기정통부
·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 상향	기재부
· 여행가는 달 정례 개최	문체부
· 영세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(4월)	해수부
· 구직급여 대상·지급수준·기간·방법 등 전반 검토	고용부
· 소외계층 영재교육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확대	교육부
·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	고용부
·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	여가부
· 단체전자사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	법무부
· '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%로 한시적 상향	기재부
·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	산업부
· 중소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	중기부
·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명확화(심사지침 개정)(5월)	공정위
· 「상생협력법 시행령」 세부기준 마련	중기부
·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 마련	공정위
· 지방채 발행한도외 차환채 인정범위 점진적 축소	행안부
·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기반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·입법 추진	고용부
· 「가칭 직업계고 발전방안」 마련	교육부
· 「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	교육부
·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 마련	금융위
·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입법 추진	금융위
·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(6월)	고용부
· 생활인구 세부 기준 마련 및 시책사업 추진	행안부
·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	기재부
· 외투기업 신산업 전환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검토	산업부
·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	행안부·산업부
· 지자체-기업 간 협약체결 등 상생인센티브 체계 마련	행안부·산업부



#### 4. '23.3/4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분양 및 주택·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'20년 전 수준 환원	기재부
·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확대	농식품부
·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(8월)	복지부
· 비전속 특고·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신규 적용(7월)	고용부
· 인력공백 해소 위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(7월)	고용부
· 수은 금리우대프로그램 연장(기한 '23.8→'23년말)	기재부
· 지자체가 건의한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·행태규제 발굴·해소	행안부
· 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	기재부
·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	공정위
· 경쟁제한성이 적은 M&A에 대해 신고면제 확대	공정위
·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근거 마련	중기부
·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 조성 추진	중기부
·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SPC 설립 허용(8월)	중기부
· M&A 벤처펀드 상장법인 투자비율 대폭 상향(8월)	중기부
· 하도급법 시행령 세부기준 마련	공정위
·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	공정위
·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下 파견제도 개편 추진	고용부
· 중기 조세특례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	기재부
·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단계적 수립	행안부
·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 유도	복지부
· 광업·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시 세액공제 부여	기재부
·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 대폭 완화	기재부

#### 5. '23.4/4분기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	기재부·금융위
· 기안기금 지원 기한 연장 추진	금융위
·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	금융위
· 임대차2법 방향에 대한 협의	법무부·국토부
·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	농식품부
·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	농식품부
· 푸드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	농식품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· 소멸예정 통신사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	과기정통부
· '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마련	국토부
· 직업훈련 심사체계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편, 인센티브 강화(10월)	고용부
·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 연령 확대(12월)	고용부
· 육아휴직제도 사용제한 완화 추진(12월)	고용부
· 소득파악체계 기반 개인별 소득 기준 고보 적용·부과(고보법 개정)	고용부
· 부산항 신규터미널 개장 및 및 배후단지 추가 공급	해수부
·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 검토	기재부
·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효율적 개편	공정위
·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	중기부
·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	농식품부
· 기업 관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중기기본법 개정	중기부
· 임무지향형 R&D 추진시 중견·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 검토	과기정통부
· 임무지향형 사업단(국가전략기술프로젝트 등) 기획·운영	과기정통부
· 정부 납부 기술료 존속여부 검토	과기정통부
· 민관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영 펀드 2천억원 조성	산업부
·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	공정위
·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	공정위
·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통해 이중구조 개선 위한 개선안 마련 추진	고용부
· 신외환법 제정 추진	기재부
·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 추진	기재부
·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·보완	복지부·저고위
·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	환경부·기재부
· 경제안보공급망법 후속 시행령 제정	기재부
· 공급망 1차 기본계획 수립	기재부
· 유턴기업 인정범위 추가 확대, 신규설비·토지 외 중고설비 및 기존 공장 매입도 보조금 지급대상 투자로 인정	산업부
· 협력형 유턴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	산업부
·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	기재부
·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및 근거법령 개선	행안부
· 착한기부자에 대한 정부포상 강화	행안부